



2023년 제4차 육아정책 심포지엄

영유아 양육지원 고도화를 위한 전제: 양육지원 정책의 체계화 및 데이터 기반 정책 강화

2023. 12.14.(목). 14:00-16:00

육아정책연구소 대회의실

주최: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PROGRAM

2023년 제4차 육아정책 심포지엄
영유아 양육지원 고도화를 위한 전제: 양육지원 정책의 체계화 및 데이터 기반 정책 강화

- 일시: 2023. 12. 14. (목), 14:00~16:00
- 장소: 육아정책연구소 대회의실(9층)

● 일정표

사회: 이재희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저출생육아지원연구팀장)

구분	내용	
14:00~14:10	인사말	박상희 소장(육아정책연구소)
14:10~15:00	발표1	영아 양육지원 현황과 체계화를 위한 정책 요구 • 이정원 선임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발표2	영유아데이터 통합 현황과 정책 과제 • 도남희 선임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15:00~15:40	종합 토론	좌장 • 유해미 선임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1) 황옥경 교수(서울신학대), 안현미 소장(돌봄정책&젠더 연구소) 2) 안재진 교수(가천대학교), 오미애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15:40~15:55	질의 응답	
15:55~16:00	폐회	



CONTENTS

2023년 제4차 육아정책 심포지엄

영유아 양육지원 고도화를 위한 전제: 양육지원 정책의 체계화 및 데이터 기반 정책 강화

● 인 사 말

박상희 소장(육아정책연구소장) 1

● 주제발표

영아 양육지원 현황과 체계화를 위한 정책 요구 3

이정원 선임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영유아데이터 통합 현황과 정책 과제 47

도남희 선임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인사말

박상희
육아정책연구소장

안녕하십니까?

벌써 12월도 중순에 이르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최근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초저출생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울한 뉴스를 접하는 가운데 오늘 영유아기 양육 지원과 데이터 기반의 정책 관련 제4차 육아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최근 정부는 생애 초기에 대한 재정투자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영아기 자녀에 대한 양육지원을 핵심과제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영아 양육 지원은 최근까지 기관의 보육서비스 이용 지원에 편중되어 있었으며, 이로 인해 선택할 수 있는 지원의 다양화, 확대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영아 양육 형태의 변화는 정책 지원에의 수요와 요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영아기 양육지원에 대한 체계화가 시급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미래 세대 육성을 위한 국가의 정책과 통계 생산 및 관리는 주요한 정책 의제이며 영유아의 삶의 질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노벨상 경제학자 제임스 해크먼이 영유아기의 투자가 사회 환원율이 높은 인적 투자임을 강조했듯이 영유아기의 성장 발달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것은 미래 인재 육성에 중요한 작업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을 추적할 수 있는 데이터의 통합 정도를 파악하고 영유아데이터 통합 현황을 검토하여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데이터 기반을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개회사

그러므로 오늘 심포지엄은 영아 양육 가구의 요구를 살피 양육지원 체계화에 대해 통찰해보고 이를 위한 영유아기의 데이터 통합은 어떻게 수행하고 관리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심포지엄의 개최 결과로서 영유아기의 양육 지원의 체계화와 데이터 기반의 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전환점이 되어 영유아기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저출산을 타개하는 정책적 실효성을 높이는 발판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저희 심포지엄을 위해 참석해주신 황옥경 교수님, 안재진 교수님, 안현미 박사님과 오미애 박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연말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4차 육아정책 심포지엄이 영유아기의 양육 지원을 체계화하고 체계화를 위한 데이터 기반 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확산하는데 초석이 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길 기대하면서, 참석하신 분들과 지원해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2월 14일

육아정책연구소장 박상희

01

발표

2023년 제4차 육아정책 심포지엄
영유아 양육지원 고도화를 위한 전제: 양육지원 정책의 체계화 및 데이터 기반 정책 강화

영아 양육지원 현황과 체계화를 위한 정책 요구

이 정 원 선임연구위원
(육아정책연구소)

01

발표



영아 양육지원 현황과 체계화를 위한 정책 요구¹⁾

이 정 원 선임연구위원
(육아정책연구소)

1. 배경: 영아 양육지원 정책의 기조 변화

□ 최근 영아 양육지원의 정책 기조 변화에 따라 가정 양육에 대한 지원이 확대 되는 한편 양육 지원의 수단 중 특히 '현금' 지원이 대폭 강화됨

- 최근 들어 생애 초기에 대한 재정투자의 중요성이 부각, 영아기 자녀에 대한 양육지원이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음. 이는 문재인 정부 시기에 수립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영아기 집중투자'가 강조되기 시작한 이래 더욱 뚜렷하게 드러나기 시작함(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0. 12. 15.).
- 윤석열 정부에서도 영아기 양육지원 강화는 지속되는 경향임. 윤석열 정부에서 영아기를 타겟화한 대표적인 정책 지원으로는 정권 교체 직후부터 논의를 거쳐 2023년에 전격적으로 도입되게 된 '부모급여'를 들 수 있음(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22. 5;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3. 1. 4).
- 최근 영아기 양육지원을 위한 주요 정책 수단은 기존의 시설 보육 등 서비스 위주에서 그동안 다소 미흡하였던 현금 지원과 시간 지원이 강화되는 등 변화를 겪고 있음.



1) 본고는 육아정책연구소의 2023년 기본과제로 수행된 「영아기 양육지원 정책 체계화 방안」(이정원·유해미·조혜주·김윤환·신윤정·한인애, 2023) 연구의 내용에 근거함.

발표 1

- 유아에 대한 양육지원의 대상 연령 연장선상에서만 논의되었던 영아에 대한 양육지원에 대해 이러한 정책적 관심을 두고 영아기의 바람직한 양육 지원을 위한 노력이 추진되었다는 자체는 매우 고무적인 부분임.

□ 이러한 영아 양육지원 정책에서의 변화는 긴밀히 연관된 정책들에 영향을 미쳐 새로운 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음.

- 영아 양육 지원이 현금지원의 확대를 통한 안심하고 가정양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가정 양육의 질 제고,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에 대한 권리, 즉 부모권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기조를 반영한 새로운 제도의 도입과 기존 제도의 확대 방향은 유관한 제도와의 관계에서 중복적인 지원이 발생하거나 반대로 여전히 누락되는 대상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파악이 필요함.

- 또한 정책 기조 변화에 기반한 새로운 제도의 도입과 확대는 수요자의 선택지의 하나로 기능하는 유관한 제도에 대한 수요에 변동을 일으킬 수 있어 이에 대한 예측과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

- 무엇보다 국가적으로 유아의 연장선상이 아닌 ‘영아’양육 지원의 차별적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통해 영아를 위해 가장 바람직한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을 통해 일관된 목표를 수립하고 이에 따라 중복·누락이 발생하지 않고 영아 양육의 욕구에 따라 다양한 양육 방식을 선택하더라도 그에 따른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책 지원의 ‘체계화’가 필요함.

- 본고는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영아 양육지원의 체계를 정리하여 다양한 상황에서 양육자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파악하고자 하였음. 또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도입되거나 확대된 영아 양육지원 정책과 관련해 유관 제도들에서 일어날 수 있는 변동에 대한 예측과 대응을 통해 영아 양육지원 정책들 간의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음.

2. 한국의 영아 양육지원 정책 현황

- 육아정책연구소 기본과제 ‘영아기 양육지원 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이정원·유해미·조혜주·김윤환·신윤정·한인애, 2023)’에서는 양육지원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자원’에 따라 서비스, 현금, 시간으로 정책 범주를 구분하고, 각 정책 범주별로 ‘영아에 특화된 지원 정책’과 영아를 특정하진 않지만 ‘영아가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정책’으로 구분하여 양육지원을 정리·분석함.

1) 서비스 범주의 영아 양육지원

□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지원은 어린이집 보육서비스(보육료), 아이돌봄서비스(이용 비용), 시간제보육(시간제 보육료)로 구성됨

-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와 아이돌봄서비스는 모두 영아를 이용 및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있는 서비스로, 보육서비스는 만 0~5세, 아이돌봄서비스는 생후 3개월~만12세 이하를 대상으로 함.

- 어린이집 보육서비스는 ‘기관돌봄’, 아이돌봄서비스는 ‘가정에서의 개별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임.

- 영아종일제서비스는 가정 양육을 제공하지만 영아 대상으로 비교적 장시간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며, 영아라는 대상의 특수성을 고려한 서비스로 시간제 일반형 서비스와는 구분됨.

□ 기관보육 혹은 가정양육 가구에 대한 서비스가 구분되며 중복지원을 제한하고 있음.

- 시간제 보육은 가정 양육 가구의 일시적인 보육서비스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서비스로 지정된 기관에서 시간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어린이집 또는 영아종일제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시간제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음.



발표 1

-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과 영아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비용, 시간제보육료 지원 간에는 중복 지원되지 않음.

- 시간제아이돌봄서비스는 이용자가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을 경우, 어린이집 이용 시간 외의 시간에 대해서만 지원 가능.

□ ‘시간 지원’대상자의 서비스 이용은 서비스별로 차이가 존재함.

- 육아휴직자의 경우 아이돌봄서비스(시간제) 혹은 영아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서는 ‘돌봄공백 기준’미충족으로 제외되나,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은 받을 수 있음. 단, 기본보육시간에 연장하여 이용하는 ‘연장보육’은 육아휴직자의 이용 자격은 제한됨.

- ‘아이돌봄서비스’는 ‘돌봄공백’에 대한 대응이라는 목적을 지니고 있어 지원 대상의 자격이 제한되며, 보육서비스는 돌봄 공백 대응 외에 더 다양한 목적을 포괄한 보편적인 서비스로 기능하고 있는 차이가 있음.

- 그럼에도 시간 지원을 받는 육아휴직자의 경우 국가 재원이 투입되는 휴직급여를 지원받기 때문에 보육료 지원은 중복적인 성격이 있을 수 있음. 단, 육아휴직 종료를 앞둔 경우 육아휴직 종료에 맞춰 자녀를 맡길 어린이집의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조치는 필요함.

□ ‘영아’특화 서비스의 이용 자격 대상의 기준에 차이가 있음

- ‘시간제보육’은 생후 6개월 이상부터 이용 대상으로 하나, ‘영아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는 생후 3개월 이상부터를 이용 대상으로 해 차이가 있음.

- 생후 3개월~6개월 미만 사이 영아에 대한 긴급한 돌봄 공백 발생 시 아이돌봄서비스 외 시간제보육에 대한 선택지도 확대할 필요가 있음.

〈표 2-1〉 서비스 범주의 영아 양육지원

구분	영아 대상 서비스 지원		영아가 대상에 포함된 서비스 지원	
	시간제 보육료 지원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주)} 이용 비용 지원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
개념	지정된 기관에서 제공하는 시간단위 보육서비스의 이용 비용을 지원	생후 3개월~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제공하는 영아종일제 서비스 이용 비용을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보육서비스 이용 비용(보육료)을 지원 *보육: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	양육공백 발생 가정의 만 12세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
목적	가정 양육가구의 일시적 보육서비스 수요 충족	아동의 안전한 보호·복지증진/영아를 둔 취업부모에 시설보육 외 선택권 제고	영유아의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의 육성/보호자의 원활한 경제적·사회적 활동 지원을 통해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	아동의 안전한 보호·복지증진, 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 돌봄 자원 창출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도입 연도	2013(시범사업으로 도입)	2010	1991(본인부담 원칙, 예외적 저소득층 지원으로 시작)	2006(시범사업으로 도입)
지원 대상	생후 6~36개월 미만의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영아(어린이집, 유치원 미이용 아동)	생후 3개월~36개월 이하 아동: (`10) 12개월 → (`14) 24개월 → (`17) 36개월로 확대	만 0~5세 - 만0~5세 영유아 중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유치원 미이용 아동	만 12세 이하 아동
지원 내용	시간제 보육료 지원(시간제 보육료의 75%) 월 80시간까지 지원 *23년 시간제보육료 시간당 4,000원	- 아이돌보미를 아동의 집으로 파견/4개 소득기준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지원단가 대비 가형 85%, 나형 60%, 다형 15%, 라형 전액 본인 부담) - 소득기준(건강보험료 기준)	- 영아반(0~2세반) 기본 보육료 전액 지원(소득 무관) - '22년 이후 출생아는 부모급여(바우처)로 보육료 전액 지원 - 연장보육 이용시 시간당 연장보육료추가 지원(영아반 시간당 2,000원)	- 아이돌보미를 아동의 집으로 파견 / 4개 소득기준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지원단가 대비 가형 85%, 나형 60%, 다형 15%, 라형 전액 본인 부담)
근거법	「영유아보육법」제 26조의2, 동법 시행령 제21조의3,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의2	「아이돌봄지원법」	「영유아보육법」제10조, 제34조	「아이돌봄지원법」제 20조, 동법 시행규칙제14조



구분	영아 대상 서비스 지원		영아가 대상에 포함된 서비스 지원	
	시간제 보육료 지원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주)} 이용 비용 지원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
비교: 특징, 타사업 중복성	영아종일제아이돌봄 서비스, 어린이집 이용 영아는 전액 본인 부담으로 이용 가능 -육아휴직 이용 여부 무관	부모급여(현금), 양육수당 또는 보육료, 유아학비,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정부지원을 받는 아동은 영아종일제 중복지원 불가 -휴직자는 미취업자로 구분되어 지원 불가(돌봄공백 기준 미충족)	가정양육수당, 부모급여(현금), 유아학비, 영아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특수교육 지원 아동 중복 지원 불가 - 다른 기관을 주된 보육·교육기관으로 이용하는 아동 ^{주)} 지원제외 -육아휴직 이용 여부 무관(단, 연장보육 자격은 제외)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의 경우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시간(종일제, 반일제, 시간연장제)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정부지원 불가 -휴직자는 미취업자로 구분되어 지원 불가(돌봄공백 기준 미충족)

출처: 이정원 외(2023). 영아기 양육지원 정책 체계화 방안, <표 II-2-12>

2) 현금 지원 범주의 영아 양육지원

- 현금 지원은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부모급여 등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현금 지원과 일회성으로 지급되는 첫만남이용권으로 구성됨.
- 대부분의 현금지원은 지급 대상의 연령 제한 외 동일 연령 내에서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은 동일 대상에 중복 지급됨.
 - 특히 영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급여(현금)을 선택할 경우 파격적인 지급수준으로 현금 지원은 영아에게 집중되는 형태를 보임.
 - 2세 이상은 가정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동시 수급 가능하나 지급액이 총액 20만원 수준으로 영아의 최대 월 80만원 및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에 비해 현저히 낮음.
- 목적의 차별성을 찾기 어려운 현금지원은 수급자에게도 차별적으로 인식되지 않아 유사 중복적 현금 지원의 통합 필요성 제기

- 가구소득, 자녀수 등에 따른 차등 없이 보편적으로 자녀가 있는 모든 가구가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모급여, 가정양육수당의 경우는 특히 특성의 차이를 구분하기 어려운 현금 지원임.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현금지원은 종류를 불문하고 구분 없이 사용되고 있음. 현금지원은 대부분 자녀 식비, 자녀양육을 위한 물품구입비, 전체 가족의 생활비로 사용됨.

〈표 2-2〉 현금성 급여(부모급여,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 사용처(중복응답)

단위: %(명)

구분	전체 가족의 생활비	자녀식비	자녀의 양육을 위한 물품 구입비	자녀의 돌봄 서비스 비용	자녀의 사교육 등 관련 비용	자녀 금융 관련 비용	자녀 참여 놀이, 체험, 문화활동 이용 비용	(수)
전체	37.5	65.0	62.3	8.4	5.0	34.7	24.1	(969)
막내 자녀 나이								
만0세	42.8	69.5	67.5	8.2	2.1	36.0	17.1	(292)
만1세	38.5	67.9	62.4	10.1	5.5	33.6	29.1	(327)
만2세	32.0	58.6	58.0	6.9	6.9	34.6	25.4	(350)
월평균 가구 소득								
400만원 미만	42.9	71.9	69.9	8.8	5.4	32.1	29.3	(352)
400만원 이상 ~ 700만원 미만	37.1	63.3	59.2	8.3	5.1	35.0	22.3	(412)
700만원 이상	28.8	56.6	55.6	7.8	3.9	38.5	19.0	(205)

출처: 이정원 외(2023). 영아기 양육지원 정책 체계화 방안, 〈표 IV-2-11〉

- 근거법은 부모급여는「아동수당법」, 가정양육수당은 「영유아보육법」으로 달라 더욱 혼동을 주는 상황임
- 부모급여가 어린이집 또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 바우처로 지원하며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형태임에도 조건 없이 8세 미만의 아동 대상으로 10만원의 금액을 현금 지급하는 아동수당과 동일한 「아동수당법」에 근거하고 있는 것도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짐. 영유아보육법과 아동수당법에 걸쳐 있는 유사·중복적 현금지원의 법률적 근거와 유형의 통폐합·간소화의 추진이 필요해 보임.



〈표 2-3〉 현금 지원 범주의 영아 양육지원

구분	영아 대상 현금지원		영아가 대상에 포함된 현금지원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도입연도 (최초지급)	2022년	2023년	2019년	2009년									
지원 대상	만 0세	만 0-1세	만 8세 미만 아동	기관, 돌봄서비스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86개월 미만									
지원 내용	출생아 1인당 국민 행복카드 포인트 200만원(1회)	-가정양육시 현금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r> <td>구분</td> <td>'23년</td> <td>'24년</td> </tr> <tr> <td>만0세</td> <td>70만원 월</td> <td>100만원 월</td> </tr> <tr> <td>만1세</td> <td>35만원 월</td> <td>50만원 월</td> </tr> </table> -기관, 돌봄서비스 이용시 차액만 지급	구분	'23년	'24년	만0세	70만원 월	100만원 월	만1세	35만원 월	50만원 월	월 10만원	연령에 따른 차등 지급 (영아기준) ①만 12개월 미만 은 월 20만원 ②만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은 월 15만원 *22년생부터 24개월 이후부터 지원
구분	'23년	'24년											
만0세	70만원 월	100만원 월											
만1세	35만원 월	50만원 월											
근거법	「저출산고령사회기 본법」 제10조 제3 항부터 제6항 「저출산고령사회기 본법 시행령」 제1조 의2	「아동수당법」 제1조, 제3조, 제4조, 「아동복지법」 제1조, 제4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조, 제4조	「아동수당법」	「영유아보육법」 제 34조의2(양육수당) 조항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출산정 책과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보건복지부 아동복 지정책과	보건복지부 보육사 업기획과									
전달체계	복지부-시·도-시· 군·구 *한국사회보장정보 원 국민행복카드 바 우처 사업 관리 *신청은 거주지 관 할 읍·면·동 행복복 지센터	복지부-시·도-시·군·구 *신청은 시·군·구 읍면동사무소(현장), 복지로, 정부 24 시(온라인) *신청 후 30일 이내 행복e음 통해 대상 아동 가구에 직 접 입금		복지부-시·도-시· 군·구 *신청은 시·군·구 읍면동사무소(현 장), 복지로, 정부 24시(온라인) *신청 후 14일 이내 심사가 진행되어 매월 25일 현금지 급									
비고: 타사업 중복성	부모급여, 아동수당 과 동시 신청 가능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 육아휴직 과 동시 신청 가능 가정양육수당과 동시 신청 안됨.	첫만남이용권, 육아 휴직, 부모급여, 가 정양육수당과 동시 신청 가능	첫만남이용권, 육아 휴직, 아동수당과 동 시 신청 가능									

출처: 이정원 외(2023). 영아기 양육지원 정책 체계화 방안, 〈표 II-2-15〉

3) 시간 지원 범주의 영아 양육지원

□ 시간 지원은 영아가 있는 부모 대상의 시간지원으로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급여 특례(3+3부모육아휴직제), 영아 부모를 대상으로 포함하는 시간 지원으로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가족돌봄휴가 및 휴직,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단축제가 포함됨.

- 영아가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시간지원 중 모성보호/태아 건강보호의 목적을 지니는 출산전후휴가는 양육지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급여의 특례인 '3+3부모육아휴직제'가 영아의 양육지원에 특화된 시간지원제도로 볼 수 있음.

- 영아 부모를 위한 시간지원은 주로 생후 1년 이내의 어린 영아의 양육에 남성 배우자의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목적의 제도로 요약됨.

-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서비스(보육, 아이돌봄서비스), 현금지원 모두 동시 수급 가능하며, '3+3부모육아휴직제'의 경우 보육서비스와 부모급여 등은 동시 수급 가능하나, 아이돌봄서비스의 돌봄공백 기준에는 미충족되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영아가 대상에 포함된 시간지원은 육아휴직과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가족돌봄휴가/휴직과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이 있음. 즉,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로를 중단하고 자녀를 집중적으로 돌볼 수 있는 '집중적인 시간지원'과 근로를 중단하지 않고 '일과 자녀 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시간을 지원하는 형태로 구분됨.

□ 시간지원의 유형이 다양화되고 시간지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특정 제도에 국한하여 이용이 활성화되거나, 특정 성별 위주로 이용되는 경향으로 시간지원 제도는 실질적 다양성, 이용 대상의 포괄성의 측면에서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발견됨.



발표 1

-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위주로 확대·강화되어 시간지원 제도 인지도와 활용도가 특정 제도에 집중되어 수요자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시간지원제도가 이용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 시간지원 제도는 특히 이용자의 성별에 따른 이용률 차이가 크게 나타남. <표 2-5>에 따르면 어머니 육아휴직 이용 경험이 40.1%로 응답되는데 반하여 아버지 육아휴직 경험은 10.9%,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이용을 전제로 하는 '3+3 부모육아휴직제'는 8.8%에 불과함.
- 육아휴직제도의 이용기간도 어머니는 평균 11.5개월, 아버지는 5.5개월 이용하여 아버지는 어머니의 절반 정도만 육아휴직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 시간지원제도가 어머니(여성) 위주로 이용되는 경향을 보여줌.

<표 2-4> 출산·양육 관련 시간지원 인지 여부

단위 : %(명)

전체	모른다	들어본 적 있다	내용까지 안다	계(수)
출산전후휴가	3.5	29.5	67.0	100.0(1,021)
배우자 출산휴가	4.3	31.6	64.1	100.0(1,021)
육아휴직	2.1	26.7	71.2	100.0(1,021)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9.6	36.3	54.1	100.0(1,021)
3+3 부모육아휴직제	39.8	34.5	25.8	100.0(1,021)
가족돌봄휴직	36.7	38.3	25.0	100.0(1,021)
가족돌봄휴가	36.7	36.5	26.7	100.0(1,021)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45.2	32.9	21.8	100.0(1,021)

자료: 이정원 외(2023) 수행을 위한 '영아 가구 양육 실태 및 정책 수요 조사(영아 부모용)' 결과.

출처: 이정원 외(2023). <표 V-2-12>

〈표 2-5〉 출산·양육 관련 지원 이용 경험 유무

단위 : %(명)

구분	있다	없다	계(수)
출산전후휴가	50.3	49.7	100.0(985)
배우자 출산휴가	51.4	48.6	100.0(959)
어머니 육아휴직	40.1	59.9	100.0(1,000)
아버지 육아휴직	10.9	89.1	100.0(981)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19.7	80.3	100.0(923)
3+3 부모육아휴직제	8.8	91.2	100.0(604)
가족돌봄휴직	5.3	94.7	100.0(646)
가족돌봄휴가	13.6	86.4	100.0(646)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6.8	93.2	100.0(559)

자료: 이정원 외(2023) 수행을 위한 '영아 가구 양육 실태 및 정책 수요 조사(영아 부모용)' 결과.
출처: 이정원 외(2023). 〈표 V-2-13〉

〈표 2-6〉 부모의 육아휴직 이용 기간

단위: %(명), 개월

어머니					아버지				
1~6 개월	7~11개 월	12개월 이상	계 (수)	평균 (개월)	1~2 개월	3~11 개월	12개월 이상	계(수)	평균 (개월)
15.5	17.2	67.3	100.0 (401)	11.5	33.6	40.2	26.2	100.0(1 07)	5.5

자료: 이정원 외(2023) 수행을 위한 '영아 가구 양육 실태 및 정책 수요 조사(영아 부모용)' 결과.
출처: 이정원 외(2023). 〈표 V-2-13〉

□ 시간지원에 대한 수요자 이용 의향은 매우 높은 수준

- 출산·양육 관련 시간 지원 제도를 알지 못했거나 이용한 경험이 없는 영아 부모를 대상으로 추후 출산·양육 관련 시간지원을 이용할 의향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시간지원 제도 이용 의향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74.3%로 가장 높고,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71.8%, '어머니 육아휴직' 71.5%, '가족돌봄휴가'도 70.3%로 높게 응답됨.



〈표 2-7〉 자녀 출산·양육을 위한 시간 지원 제도의 이용 의향

단위 : %

구분	있다	없다	잘 모르겠다	계
어머니 육아휴직	71.5	14.5	14.0	100.0(620)
아버지 육아휴직	65.1	17.7	17.2	100.0(893)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74.3	13.6	12.2	100.0(839)
3+3 부모육아휴직제	64.0	16.3	19.7	100.0(947)
가족돌봄휴직	68.4	13.6	18.0	100.0(987)
가족돌봄휴가	70.3	13.4	16.3	100.0(933)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71.8	12.6	15.6	100.0(983)

자료: 이정원 외(2023) 수행을 위한 '영아 가구 양육 실태 및 정책 수요 조사(영아 부모용)' 결과.

출처: 이정원 외(2023). 〈표 V-2-20〉

- 어머니 육아휴직제도 추후 이용 의향을 가구 특성에 따라 살펴본 결과, 본인 종사자 지위가 임시/일용직일 경우 이용할 의향이 84.6%로 나타남. 동조사 결과 실제 해당 직위에서 어머니 육아휴직을 이용한 경우는 19.4%로 낮은 편이었음. 즉, 실제로 사용하고 싶지만 종사자 지위 상 사용하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볼 수 있음.

〈표 2-8〉 어머니 육아휴직제도 이용 의향

단위: %(명)

구분	있다	없다	잘 모르겠다	계(수)
전체	71.5	14.5	14.0	100.0(620)
막내 자녀 나이				
만0세	73.7	12.9	13.5	100.0(171)
만1세	69.8	16.0	14.2	100.0(212)
만2세	71.3	14.3	14.3	100.0(237)
X ² (df)	0.9(4)			
본인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78.0	9.3	12.7	100.0(118)
임시/일용근로자	84.6	3.8	11.5	100.0(26)
사업자/자영자/무급가족종사자/기타 종사자	67.0	17.5	15.5	100.0(103)
경제활동안함/휴학	69.7	16.1	14.2	100.0(373)
X ² (df)	7.7(6)			
월평균 본인(모) 근로 소득				
근로소득 없음	70.6	15.5	13.9	100.0(187)
300만원 미만	71.0	13.0	16.0	100.0(200)

구분	있다	없다	잘 모르겠다	계(수)
300~500만원 미만	71.2	15.0	13.7	100.0(153)
500만원 이상	75.0	15.0	10.0	100.0(80)
X ² (df)	2.1(6)			

자료: 이정원 외(2023) 수행을 위한 '영아 가구 양육 실태 및 정책 수요 조사(영아 부모용)' 결과.
출처: 이정원 외(2023). <표 V-2-21>

- 아버지 육아휴직제도를 알지 못했거나 이용한 경험이 없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추후 이용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65.1%가 향후 이용 의향이 있었음. 동조사 결과 아버지 육아휴직제도의 실제 이용 경험은 10.9%였던 것을 고려하면 아버지가 육아휴직을 하고 싶지만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추측됨.
- 아버지 육아휴직 이용 의향은 자녀 연령이 어릴수록 높았음. 한편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지만 모의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일 때 아버지 육아휴직 제도 이용 의향이 높아져서, 배우자의 근로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아버지가 육아휴직을 하더라도 가정경제가 유지가 된다고 판단될 때 아버지의 육아휴직 이용 의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여짐.



<표 2-9> 아버지 육아휴직 이용 의향

단위: %(명)

구분	있다	없다	잘 모르겠다	계(수)
전체	65.1	17.7	17.2	100.0(893)
막내 자녀 나이				
만0세	70.7	14.9	14.5	100.0(276)
만1세	64.5	17.1	18.4	100.0(299)
만2세	60.7	20.8	18.6	100.0(318)
X ² (df)	7.0(4)			
맞벌이 여부				
맞벌이임	66.9	17.3	15.9	100.0(492)
맞벌이 아님	62.8	18.2	19.0	100.0(401)
X ² (df)	1.9(2)			
월평균 본인(모)의 근로 소득				
근로소득 없음	67.6	15.6	16.9	100.0(225)
300만원 미만	63.5	18.4	18.1	100.0(326)
300~500만원 미만	63.4	18.1	18.5	100.0(216)
500만원 이상	67.5	19.0	13.5	100.0(126)
X ² (df)	2.7(6)			

자료: 이정원 외(2023) 수행을 위한 '영아 가구 양육 실태 및 정책 수요 조사(영아 부모용)' 결과.
출처: 이정원 외(2023). <표 IV-2-22>

발표 1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알지 못했거나 이용 경험 없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향후 이용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있다는 응답이 74.3%이었음. 자녀 연령이 어릴수록 이용하고 싶다는 응답이 78.8%로 다른 연령에 비해 높았으며, 임시/일용근로자인 경우 이용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82.1%로 높게 나타남.

〈표 2-1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 의향

단위: %(명)

구분	있다	없다	잘 모르겠다	계(수)
전체	74.3	13.6	12.2	100.0(839)
막내 자녀 나이				
만0세	78.8	11.4	9.8	100.0(255)
만1세	71.8	14.3	13.9	100.0(287)
만2세	72.7	14.8	12.5	100.0(297)
$X^2(df)$		4.3(4)		
본인(모)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74.6	13.9	11.6	100.0(303)
임시/일용근로자	82.1	7.1	10.7	100.0(28)
사업자/자영자/무급가족종사자/기타 종사자	68.2	20.9	10.9	100.0(110)
경제활동안함/휴학	75.1	11.8	13.1	100.0(398)
$X^2(df)$		7.5(6)		

자료: 이정원 외(2023) 수행을 위한 '영아 가구 양육 실태 및 정책 수요 조사(영아 부모용)' 결과.
출처: 이정원 외(2023). 〈표 V-2-23〉

- 가족돌봄휴가/휴직제도와 같이 신규 제도의 인지 및 이용률 강화를 위해서는 시간을 지원받는데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보전할 수 있는 무급 시간지원의 유급화, 유급 시간지원의 급여수준 상향 등 경제적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함.
- 시간 지원 제도에 대한 영아 부모들의 개선 요구 사항은 공통적으로 '이용 기간 확대', '급여 수준 상향(유급화 포함)',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의 세 가지로 압축되는 경향이나 제도의 유형별로는 개선요구 사항의 순위에 차이가 있었음.

- 시간지원 제도별 자녀양육의 도움을 위해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은 주로 이용자의 성별(아버지, 어머니)과 유급 여부, 자녀 돌봄을 위한 시간을 지원하는 유형²⁾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
- 즉, 이용자의 성별이 ‘남성’인 시간지원제도는 무엇보다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았음. 그만큼 ‘시간지원 제도’가 아직까지 여성을 위한(또는 여성의 책임으로서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인식되어 남성이 권리로써 이용하기는 아직 어려운 상황으로 볼 수 있음. 이러한 분위기가 지속된다면 여성과 남성의 자녀양육참여의 불균형을 심화시킬 위험성 조차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남녀가 평등하게 시간지원제도 이용과 양육을 수행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시급하다 할 수 있음.
- ‘어머니의 육아휴직’은 무엇보다 ‘급여수준 상향’에 대한 요구가 높으며, 이외 ‘이용기간 확대’의 요구가 높았음. ‘급여수준 상향’은 사회적 분위기 조성 다음으로 아버지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서도 필요한 중요한 개선사항으로 응답되었으나, ‘기간 연장’에 대한 요구는 10.3%로 높지 않은 수준이었음. 이는 현재 급여 수준에서 아버지의 휴직 기간이 길어질수록 가계의 경제적 부담과 직장분위기의 부담이 높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을 것임.
- 한편, 시간 지원 제도 유형 중 ‘장기간’의 집중적인 자녀양육시간을 지원하는 ‘휴직’관련 제도(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는 남성으로 특정되지 않은 경우 ‘급여수준 상향’의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남. 시간지원제도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은 원하는 만큼의 시간지원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으로 볼 수 있음. 이는 특히 외벌이 가구의 부모, 한부모의 시간지원제도 이용의 권리를 저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개선이 요구됨.



2) ‘장기간 집중적인 시간 지원(휴직)’ 또는 ‘일시적인 시간 지원(휴가)’, ‘지속적인 시간 단축’ 등

〈표 2-11〉 자녀양육을 위한 시간 지원의 개선 요구 사항

단위: %(명)

구분	이용 기간 확대	급여 수준 상향 (유급화 포함)	이용 자격 제한 완화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이용 시 업무 수행 상의 불편 제거	이용 시 경력에서의 불이익 금지	기타	개선 필요 사항 없음	계(수)
배우자 출산휴가	36.5	10.8	1.6	40.2	5.1	4.9	0.6	0.4	100.0(493)
어머니 육아휴직	24.4	40.6	1.2	20.7	5.5	6.5	0.7	0.2	1000(401)
아버지 육아휴직	10.3	33.6	1.9	43.0	4.7	5.6	0.0	0.9	100.0(107)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28.0	16.5	2.7	36.8	8.8	4.9	0.0	2.2	100.0(182)
가족돌봄휴직	26.5	35.3	0.0	23.5	5.9	8.8	0.0	0.0	100.0(34)
가족돌봄휴가	21.6	30.7	2.3	35.2	5.7	2.3	1.1	1.1	100.0(88)
가족돌봄 위한 근로시간 단축	31.6	21.1	0.0	42.1	2.6	2.6	0.0	0.0	100.0(38)

자료: 이정원 외(2023) 수행을 위한 '영아 가구 양육 실태 및 정책 수요 조사(영아 부모용)' 결과.
출처: 이정원 외(2023). 〈표 IV-3-5〉

- 다양한 요구에 맞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간지원 제도들의 균형적인 발전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시간지원은 유형에 따라 대리돌봄을 지원하는 '서비스'지원과 중복지원 가능성에 차이가 있음

- 우선, 시간지원은 일과 양육을 병행하는 형태인 '근로시간단축제도'일 경우 보육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지원을 받는데 제한이 없음. 반면 일을 중단하고 집중적으로 자녀를 돌보는 '휴직'형태일 경우 보육서비스 비용 지원에는 제한이 없으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비용 지원은 '돌봄공백'기준의 미충족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보육서비스의 경우도 기본보육시간 외에 '연장보육' 이용 및 비용 지원에는 휴직자는 제외됨.

〈표 2-12〉 시간지원 범주 중 영아가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양육지원

구분	영아가 있는 부모) 대상 시간지원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급여 특례 (3+3부모육아휴직제)
개념	출산을 앞둔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출산 전과 후에 부여되는 최소한의 보호휴가	배우자의 건강보호와 자녀 양육을 위해 배우자가 출산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휴가	생후 12개월 이내의 자녀를 위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 지급하는 제도 (월 최대 300만원)
목적	모성보호/ 태아 건강 보호	모성보호/자녀 양육	초기 영아기의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
도입연도(시행일 기준)	1953(유급보호휴가 60일 부여)	2008(무급) →2012(유급)	2022
지원 대상	임신 중인 근로자	배우자가 출산한 근로자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지원 내용	-출산 전후 90일 부여(출산 후 45일 보장), 다태아일 경우 120일 부여(출산 후 60일 보장) 및 통상임금 지급 -유산·사산 위험 있는 근로자는 출산 전 분할사용 가능(횟수 제한, 최대 44일 내 기간 제한 없음)	-10일 유급 휴가 부여 (통상임금 지급 401, 910원 상한) -1회 분할사용 가능	-자녀 생후 12개월 내 육아휴직 이용 시 부모 각각 첫 3개월의 육아휴직급여 상한지급(통상임금의 100% 지급)
근거법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주무부처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전달체계	-사업주에 신청서 작성하여 신청, 급여는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에 신청	-사업주에 신청서 작성하여 신청, 급여는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에 신청	-사업주에 신청서 작성하여 신청, 급여는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에 신청
비고: 타사업 중 복성	모성보호가 주 목적 /서비스(보육, 아이돌봄) 또는 현금 지원(부모급여) 수급 가능	모성보호 및 자녀양육 목적 /서비스(보육, 아이돌봄) 또는 현금 지원(부모급여) 수급 가능	출산휴가 후 사용 가능/서비스, 현금 지원 수급 가능

출처: 이정원 외(2023). 영아기 양육지원 정책 체계화 방안, 〈표 II-2-27〉



〈표 2-13〉 시간지원 범주중 영아(가 있는 부모)를 대상에 포함하는 양육지원

구분	영아가 대상에 포함된 시간지원			
	육아휴직(급여)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 휴가/휴직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정의	일정 연령 이하의 자녀 양육으로 일-가정 양립의 부담이 큰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일정 연령 이하의 자녀 양육으로 일-가정 양립의 부담이 큰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가족돌봄휴직) 장기적으로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근로자에게 허용되는 무급휴직 -(가족돌봄휴가) 단기적, 긴급한 사유로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근로자에게 허용되는 무급 휴가	가족돌봄, 본인 건강, 은퇴 준비, 학업을 위해 기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제도
목적	-(도입 초기) 모성 보호 및 영아 양육 지원 →육아로 인한 근로자의 경력단절 방지/일-가정 양립 지원	육아기에도 근무를 지속함으로써 경력단절 방지와 일-가정 양립을 동시에 달성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으로 인한 근로자의 경력단절 방지, 일-가정 양립 지원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 및 자녀양육으로 인한 필요에 대응, 일-가정 양립 지원	근로자의 생애주기에 따라 일·생활 균형을 폭넓게 보장
도입연도 (시행일기준)	1988	2008	-(가족돌봄휴직) 2008 -(가족돌봄휴가) 2020	2019
지원 대상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	-(가족돌봄휴직) 질병, 사고,노령을 이유로 장기적인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근로자 -(가족돌봄휴가) 질병,사고, 노령,자녀양육을 이유로 단기적,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근로자	-모든 근로자
지원 내용	-한 자녀 당 부모 근로자 각각 1년씩 사용 가능(부부 동시 육아휴직도 가능), 분할 사용 가능(2회) -육아휴직기간 중 통상 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휴직급여로 지급	-한 자녀 당 부모 근로자 각각 1년씩(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시 2년까지) 주당 15-35시간으로 단축하여 근무, 분할 사용 가능(1회 3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 일부를 통상 임금 기준으로 지원	-(가족돌봄휴직) 연간 최대 90일, 해마다 반복 이용 가능(무급) -(가족돌봄휴가) 연간 최대 10일 1일 단위로 사용 가능(비상시 10일 범위내 연장 가능),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	-가족돌봄, 본인 건강, 은퇴준비, 학업을 위해 1년까지(학업 외 사유는 연장하여 최대 3년까지) 주당 15~30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함. -(질병, 사고로 인한 돌봄이 아닌) 자녀양육을 위해서는 사용 불가

구분	영아가 대상에 포함된 시간지원			
	육아휴직(급여)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 휴가/휴직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근거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법	남녀고용평등법
주무부처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전달체계	-사업주에 신청서 작성하여 신청, 급여는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에 신청	-사업주에 신청서 작성하여 신청, 급여는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에 신청	-사업주에 신청	-사업주에 신청
비고: 타사업 중복성 등	-어린이집 이용 가능(연장보육제외)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 불가(양육공백 기준 미충족)	-취업중으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 가능(돌봄공백 기준 충족)	-휴직자는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지원 불가(양육공백 기준 미충족)	-취업중으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 가능(돌봄공백 기준 충족)

출처: 이정원 외(2023), 영아기 양육지원 정책 체계화 방안, <표 II-2-28>



□ 영아 양육지원 정책 범주 간 중복 및 누락의 문제 제기

- 전반적으로 서비스 범주와 시간 지원의 범주 간 다소 중복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발견됨. 단, 이는 서비스 이용 연계가 담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현실적인 필요성에 의한 결과로 양육지원의 체계화를 통해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임.
- 체계화를 위해서는 정책 범주 간 목적의 명료화가 필요하나 현재 정책 지원의 목적 보다는 수요자의 형평성 요구에 따라 정책지원이 중복적으로 확대된 측면이 있어 보임.
- 현재 우리나라의 영아 양육지원 정책에서는 ‘시간 지원’ 범주가 대상면에서 지원이 미흡하거나 누락이 된 부분이 있고, 연령별로는 영아기(특히 0세), 정책 지원의 범주별로는 유사한 형태의 현금 지원이 중복되고 있어 통폐합이 필요한 범주로 지적되었음.

3. 영아 양육지원 정책 변화에 따른 영향

- 2023년부터 도입된 파격적 수준의 현금지원 ‘부모급여’, 육아휴직제도의 지속적인 확대가 가져올 영아 가구의 양육형태 변화와 그에 따른 양육지원 제도에 대한 수요 변화를 예측하여, 선제적인 조정과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영아 양육지원 분야의 정책 변화에 따른 양육지원의 효과와 유관 제도들에 대한 이용 수요 변화는 0~2세 영아를 둔 부모, 영유아 양육지원 연구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확인함.

□ 부모급여 도입으로 인한 유관제도 이용 수요의 변화 예측

- 전문가를 대상으로 부모급여 도입으로 인한 유관 영아 양육지원 제도 이용 수요 변화에 대한 예측 의견을 수렴함.
- 전문가들은 부모급여 도입으로 보육서비스 이용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하였음(수요 감소 예측 65.6%). 즉, 부모급여 도입으로 가정양육 수요가 증가하면 보육서비스 이용 수요는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임.
- 가정 내에서 대리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이용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감소 전망보다 다소 높게 나타남.
- 육아휴직 이용은 부모급여 도입으로 인한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56.3%로 우세하였으나, 이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도 34.4%로 나타남.

〈표 3-1〉 부모급여 도입으로 인한 유관 제도 이용 수요 변화 예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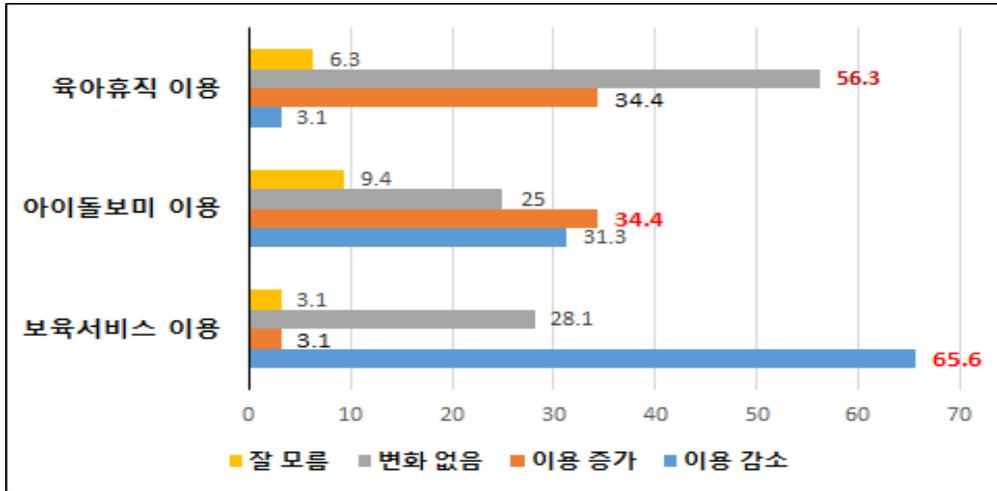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이용이 감소할 것	이용이 증가할 것	변화가 없을 것임	잘 모르겠음	계(수)
보육서비스 이용	65.6	3.1	28.1	3.1	100.0(32)
아이돌봄보미 이용	31.3	34.4	25.0	9.4	100.0(32)
육아휴직 이용	3.1	34.4	56.3	6.3	100.0(32)

자료: 이정원 외(2023) 수행을 위한 ‘영아 가구 양육지원을 위한 전문가 조사’ 결과.
출처: 이정원 외(2023). 〈표 IV-4-17〉

[그림 3-1] 부모급여 도입으로 인한 유관 제도 이용 수요 변화 예측

단위: %



□ 육아휴직 제도 확대·강화의 영향

- 육아휴직 이용 기간 확대 시 이용 수요는 이용자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일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하였음.
- 이용 가능 기간이 부부 1명당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 시 여성의 육아휴직 이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이 37.5%, 남녀 모두의 육아휴직 이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이 34.4%로 비슷하게 응답됨.
- 한편, 이용 가능 기간이 확대될 경우 남녀의 육아휴직 ‘이용 기간’도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였음. 여성의 육아휴직 기간이 길어질 것이라는 응답이 53.1%, 남녀 모두 이용 기간이 길어질 것이라는 응답은 34.4%로 육아휴직 이용 가능 기간이 확대될 경우 그로인한 육아휴직 이용과 이용기간 확대의 효과는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더 크게 작용할 것으로 예측됨.



〈표 3-2〉 육아휴직 이용 가능 기간 확대시 성별 이용 수요(이용률 및 이용기간) 변화 예측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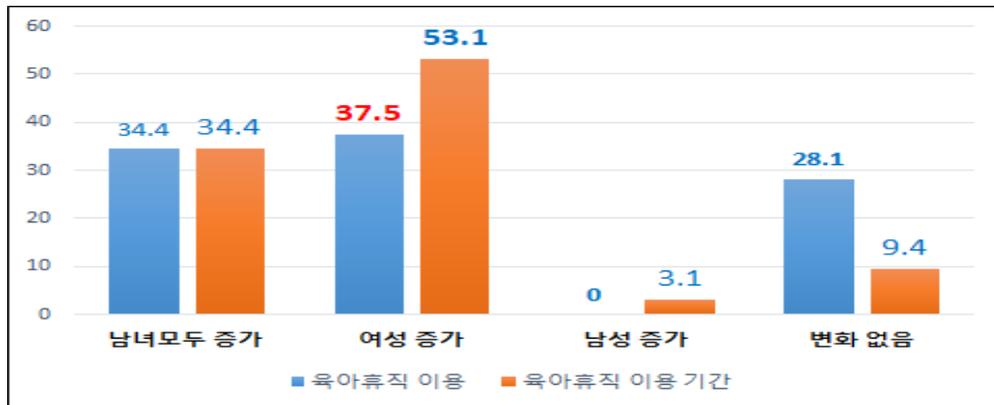
구분	남녀 모두에서 증가	여성에게서 증가	남성에게서 증가	변화가 없을 것임	계(수)
육아휴직 이용	34.4	37.5	0.0	28.1	100.0(32)
육아휴직 이용 기간	34.4	53.1	3.1	9.4	100.0(32)

자료: 이정원 외(2023) 수행을 위한 '영아 가구 양육지원을 위한 전문가 조사' 결과.

출처: 이정원 외(2023). 〈표 IV-4-17〉

[그림 3-2] 육아휴직 이용 가능 기간 확대시 성별 이용 수요(이용률 및 이용기간) 변화 예측

단위: %



- 한편 육아휴직 급여가 상향될 경우에는 남녀를 불문하고 육아휴직 이용과 이용기간이 모두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이 68.8%로 나타나, 육아휴직 이용 기간 확대는 주로 여성의 이용 수요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과 차이를 보임. 즉,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을 증진하는데는 급여 상향의 영향이 더 클 것이라는 점을 시사함.

〈표 3-3〉 육아휴직급여 상향 시 성별 이용 수요(이용률 및 이용기간) 변화 예측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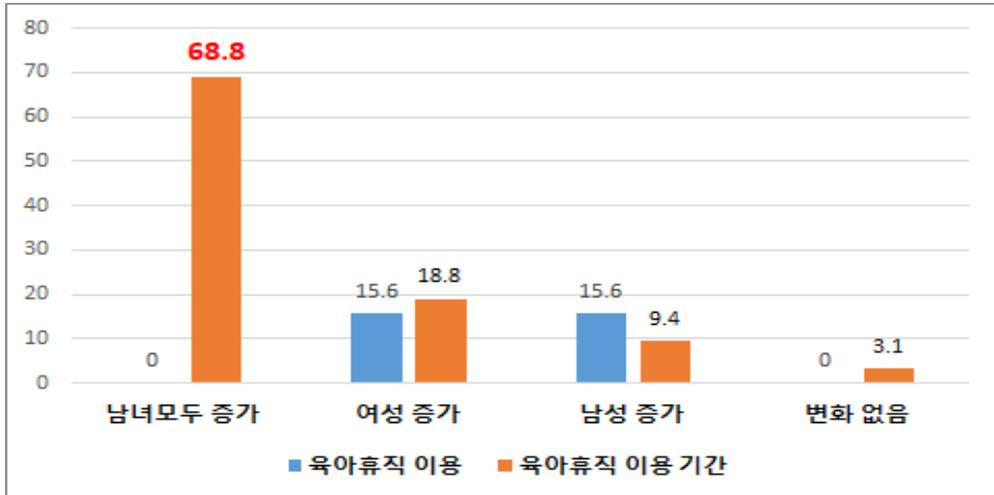
구분	남녀 모두에서 증가	여성에게서 증가	남성에게서 증가	변화가 없을 것임	계(수)
육아휴직 이용	68.8	15.6	15.6	0.0	100.0(32)
육아휴직 이용 기간	68.8	18.8	9.4	3.1	100.0(32)

자료: 이정원 외(2023) 수행을 위한 '영아 가구 양육지원을 위한 전문가 조사' 결과.

출처: 이정원 외(2023). 〈표 IV-4-17〉

[그림 3-3] 육아휴직급여 상향 시 성별 이용 수요(이용률 및 이용기간) 변화 예측

단위: %



- 육아휴직 이용 가능 기간 확대시 자녀가 초등학생일 때와(43.8%) 영아일 때 (31.3%) 이용 기간이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이 높게 나타남. 육아휴직 이용 기간이 증가할 경우 맞벌이 가구 영아의 보육서비스 최초 이용 시기는 늦추어 질 수 있음을 의미함.

<표 3-4> 육아휴직 이용 가능 기간의 확대 시 육아휴직 이용 시기 변화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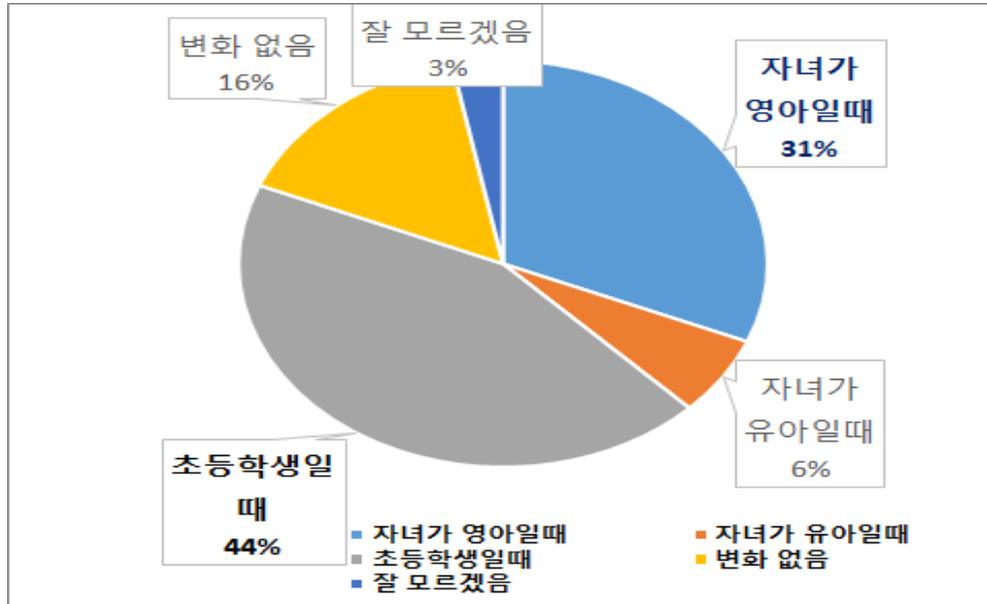
자녀가 영아일 때 더 이용 기간 증가	자녀가 유아일 때 더 이용 기간 증가	자녀가 초등학생일 때 더 이용 기간 증가	이용 시기의 경향성 변화가 없을 것임	잘 모르겠음	계(수)
31.3	6.3	43.8	15.6	3.1	100.0(32)

자료: 이정원 외(2023) 수행을 위한 '영아 가구 양육지원을 위한 전문가 조사' 결과.
출처: 이정원 외(2023). <표 IV-4-20>



[그림 3-4] 육아휴직 이용 가능 기간의 확대 시 육아휴직 이용 시기 변화

단위: %



- 실제 전문가들은 육아휴직 이용 가능 기간 확대 시 영아의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시기가 지금보다 늦어질 것이라는 응답이 59.4%로 높게 예측하였음.

<표 3-5> 육아휴직 이용 가능 기간의 확대 시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시기

단위: %(명)

지금보다 영아의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시기가 늦어질 것임	영아의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시기에 변화가 없을 것임	잘 모르겠음	계(수)
59.4	28.1	12.5	100.0(32)

자료: 이정원 외(2023) 수행을 위한 '영아 가구 양육지원을 위한 전문가 조사' 결과.
출처: 이정원 외(2023). <표 IV-4-21>

4. 영아 양육지원 정책 체계화 요구

가. 유아와 차별화된 '영아 양육지원 정책'의 체계 구축

1) 유아와 차별화된 '영아 양육지원 정책'의 대상 연령 기준 정립

- 영아 양육지원 정책의 체계화 방안을 논하기에 앞서, 우선 유아(만3~5세)와는 양육지원 정책의 방향과 전략이 차별화되어야 할 ‘영아’양육지원 정책의 대상 연령대를 확인하였음.
- 정책 지원의 방향과 전략이 유아와 차별화되어야 할 ‘영아 양육지원 정책’의 대상 연령대는 만0~1세(생후 24개월 미만까지)라는 응답이 우세하였음 (50.0%). 이외 만0세(생후 12개월 미만까지)라는 의견도 28.1%로 대다수는 0~1세까지를 유아와 차별화된 정책 방향과 전략이 필요한 연령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4-1〉 영아 양육지원 정책의 대상 연령대

단위: %(명)

0세 (생후12개월 미만)	0~1세 (생후24개월 미만)	0~2세 (생후36개월 미만)	유아(만3~5세)와 차별화된 방향성 및 전략 불필요	계(수)
28.1	50.0	18.8	3.1	100.0(3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 가구 양육지원을 위한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출처: 이정원 외(2023), 〈표 V-4-22〉

2) 영아 양육지원 정책의 정합성 진단

- 현재 영아 양육을 돕기 위한 서비스, 현금, 시간 지원 정책의 범주 중 특정 대상에 지원이 미흡 또는 누락되거나 반대로 중복지원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한 결과, 전문가 중 약 50%가 ‘특정 대상’에 지원이 미흡한 부분이 있고, 28.1%는 특정 대상이 지원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다고 응답함. 반대로 특정 대상에 지원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는 의견은 31.3%였음.



〈표 4-2〉 현재 영아 양육지원 정책의 서비스, 시간, 현금 지원 범주에서 특정 대상에 지원이 미흡하거나, 중복 지원 또는 지원이 누락된 부분

단위: %(명)

구분	있음	없음	잘 모르겠음	계(수)
특정 대상에 지원이 미흡한 부분	50.0	34.4	15.6	100.0(32)
특정 대상이 지원에서 누락된 부분	28.1	43.8	28.1	100.0(32)
특정 대상에 지원이 중복되는 부분(들)	31.3	37.5	31.3	100.0(3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 가구 양육지원을 위한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출처: 이정원 외(2023), 〈표 V-4-23〉

- 전반적으로 시간 지원이 지원이 미흡하거나 대상이 누락이 된 부분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외 발달 특이성이 있거나 장애의 경계선상에 있는 영아, 다태아, 결혼이민자 가정의 영아 등에 대한 정교한 서비스가 미흡하며, 육아휴직도 상한액이 낮아 지원이 미흡한 제도로 지적됨.

〈표 4-3〉 지원이 미흡한 대상과 미흡한 지원 내용

내용
- 불안정, 비정규, 비정형(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노동자에 시간지원(육아휴직 등) 미흡. 노동시장 내부자에 혜택 집중.
- 육아휴직은 낮은 상한액 설정으로 지원 미흡
- 양육 위기 상황(부모의 우울, 중독, 빈곤 등)에 대한 양육지원 미흡
- 발달특이성을 보이는 영아, 장애 위험군(경계선 영아)에 대한 지원 미흡
- 다태아, 한국 적응이 되기 전의 결혼이민자 여성의 영아 자녀 등에 대한 정교한 서비스 미흡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 가구 양육지원을 위한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출처: 이정원 외(2023), 〈표 V-4-24〉

〈표 4-4〉 지원이 누락된 대상과 지원 내용

내용
- 한국 국적 없는 거주 영아(국적 없는 영아에 대한 지원 자격 요건 파악 방안 필요)
- 소득 기준에 따른 차등 지원으로 지원에서 제외되는 맞벌이 가구(소득 파악의 정확성, 정교성 필요)
-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육아휴직 적용 제외
- 비정형 노동자 시간지원 대상 누락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 가구 양육지원을 위한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출처: 이정원 외(2023), 〈표 V-4-25〉

- 한편, 연령별로는 영아기(특히 0세)에 다양한 지원이 중복되고 있고, 정책지원의 범주별로는 유사한 형태의 현금 지원이 중복되고 있어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지적됨.

〈표 4-5〉 지원이 중복된 대상과 지원 내용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아기에 수당과 서비스, 시간지원(휴직), 첫만남이용권, 지자체 지원의 혜택이 집중되고 이후 연령별 격차가 큼. - 0세아에게 지원이 중첩적으로 몰려 있음.(현금, 서비스, 육아휴직). 0세 아동에 대한 보육지원정책의 목표가 불분명한 것도 원인이 되고 있음. 정책 방향에 따라 정책 범주별 중복성을 염두에 두고 지원이 정비될 필요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대상에 대한 중복보다는 유사 정책들이 중복 지원되고 있음. 적정수준으로 통폐합하여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현금 지원의 중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휴직을 이용하는 것 자체가 노동시장에서 상당한 지위를 갖고 있다는 표증인데(안정적, 복귀보장 등), 부모 급여 지급과 육아휴직 이용이 모두 가능한 대상은 다른 노동자에 비해 지원이 중복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 가구 양육지원을 위한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출처: 이정원 외(2023), 〈표 V-4-26〉



나. 전반적 체계화의 방향성 제안

- 전문가 의견 수렴 결과, 우리나라의 영아 양육지원은 서비스, 시간, 현금 지원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특정 대상은 지원이 미흡하거나 여전히 대상에서 누락이 된 경우, 혹은 중복지원으로 지원 정책 간의 정합성이 낮은 부분이 발견되었음.
- 우리나라 영아 양육지원 정책은 다양성을 갖추고 있으나 일부 정책 범주 간의 중복지원이나 지원의 충분성 부족, 사각지대의 발생 등 정합성이 낮은 부분이 있다고 보여짐. 이에 정책 지원 부문 간 정합성 제고를 위해 가능한 개선 방향을 전문가 조사에서 제시, 의견을 수렴하여 보았음.
- 총 8개의 정합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향 중 가장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영아 양육지원 정책 지원 부문 간 개선 방향은 '영아 양육지원 정책의 방향성 명확화'였음(평균 3.6점). 즉, 전문가들은 영아 양육지원 정책 체계화를 위

해 우선적으로 우리나라의 ‘영아 양육지원 정책’이 지향하는 목표와 중요시하는 점이 명확해야 그러한 목표를 위해 각 정책 지원 부문의 역할이 짜임새 있게 정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가 영아 양육지원을 통해 지향하는 목표를 가장 먼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또한 수요자(영아 가구)의 입장에서는 영아 가구의 욕구에 따라 다양한 정책 지원의 선택지를 한 눈에 보고 접근할 수 있는 ‘일원화된 정책 정보 제공 및 신청 통로(플랫폼)’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일원화된 플랫폼이 마련된다면 정책 제공자의 입장에서도 양육지원 정책의 지원이 미흡하게 주어지거나 누락, 중복되는 대상을 파악하는데도 용이할 것임.
- 단, 전문가들은 상대적으로 ‘영아 양육지원 정책 및 사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유관 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사업 조정’(3.2점), ‘영아 양육지원 정책 대상인 영아의 기준 일원화’(3.1점)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다소 낮게 인식하고 있었음. 즉, 정책 지원을 체계화하는데 있어 국가가 정책을 통해 목표로 하는 바를 명확하게 하고 그에 따라 각 정책 지원 부문들도 동일한 지향점에서 각 부문의 역할을 정하여 분담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 일원화된 행정관리체계 구축이나 사업대상의 통일과 같은 것은 다소 ‘기계적·형식적’ 체계화로 우선순위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음.

〈표 4-6〉 영아 양육에 필요한 시간, 서비스, 현금 지원 부문 간 정합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향

단위: %(명), 점

구분	① 매우 불필요	② 불필요	①+② 불필요	③ 필요	④ 매우 필요	③+④ 필요	계(수)	평균
총괄 컨트롤 타워 설립 또는 협력체계 구축	3.1	12.5	15.6	50.0	34.4	84.4	100.0(32)	3.2
‘영아’의 기준 일원화	3.1	6.3	9.4	68.8	21.9	90.6	100.0(32)	3.1
영아 가구 특성별 양육 요구의 파악 및 관련 정책 지원 구분	0.0	3.1	3.1	56.3	40.6	96.9	100.0(32)	3.4
영아 양육 지원 정책의 방향성 명확화	0.0	0.0	0.0	40.6	59.4	100.0	100.0(32)	3.6

구분	① 매우 불필요	② 불필요	①+② 불필요	③ 필요	④ 매우 필요	③+④ 필요	계(수)	평균
시간, 서비스, 현금 지원의 정책 목표의 확인	0.0	0.0	0.0	53.1	46.9	100.0	100.0(32)	3.5
현금, 시간, 서비스 지원별 법령 정비와 통합 재정의 확보	0.0	3.1	3.1	43.8	53.1	96.9	100.0(32)	3.5
영아 양육 지원 정책의 통합적 모니터링 체계 구축	0.0	0.0	0.0	56.3	43.8	100.0	100.0(32)	3.4
일원화된 통합 정책 정보 제공 및 신청 플랫폼 구축	0.0	0.0	0.0	43.8	56.3	100.0	100.0(32)	3.6

주: '평균'은 '매우불필요=1점' ~ '매우 필요=4점'으로 평정하여 산출한 결과임.
 자료: 이정원 외(2023) 수행을 위한 '영아 가구 양육지원을 위한 전문가 조사' 결과.
 출처: 이정원 외(2023). <표 V-4-27>

다. 영아 양육지원 관련 사업의 대상(일원화) 연령 조정

- 본 연구를 위한 전문가 조사를 통해 영아 양육 지원 사업들 간 지원 유형(범주)이나 소관 부처에 따라 '대상 영아의 연령 기준'의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한 조정 및 일원화가 필요한지 의견을 수렴함.
- 가정양육을 하는 영아의 양육지원을 위한 서비스 제공 사업인 보건복지부의 '시간제 보육'의 이용 연령 하한을 시간제 개별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여성가족부 사업인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의 이용 연령 하한인 생후 3개월과 동일하게 현재 생후 6개월에서 생후 3개월로 하향 조정이 적절한지 의견을 수렴함. 전문가의 68.8%가 이러한 최저 연령 하향을 적절하다고 응답함.
- 한편, 현재 0~1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는 '부모급여'의 경우 '시간제 보육'이나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처럼 '영아'를 36개월 미만(또는 이하)까지로 통일하기 위해 지급 대상을 생후 35개월까지로 상향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보다 낮은 50%가 적절하다고 응답함.



〈표 4-7〉 영아 양육지원을 위한 사업의 대상 연령 조정의 적절성

단위: %(명)

구분	적절함	적절하지 않음	계(수)
시간제 보육 이용 대상연령 하한 하향 조정 (생후 6개월 → 생후 3개월)	68.8	31.3	100.0(32)
부모급여 지급 대상 연령 상향 조정 (생후 23개월 이하 → 생후 35개월 이하)	50.0	50.0	100.0(3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 가구 양육지원을 위한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출처: 이정원 외(2023). 〈표 V-4-28〉

라. 영아 양육지원 관련 사업의 조정

- 영아 가구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영아 양육지원 정책 및 사업의 지원 기준 등의 변경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함.
- 정책 및 사업 기준 변경 관련 네 가지 항목 중 '어린이집 입소대기 우선순위 항목으로 육아휴직 종료 및 복귀 추가'에 96.9%의 전문가가 적절하다고 응답하여 가장 많은 전문가들의 지지를 얻은 적절한 기준 변경 사항으로 나타남.
- 이외에도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등 현금성 지원들에 가구소득, 자녀수 또는 출생순위(다자녀 우대) 등 차등 지원 기준을 도입'(68.8%), '어린이집 연장보육료를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65.6%), 영유아 자녀수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 차등화 '시간 지원에 자녀수 기준을 적용한 지원 강화'(65.6%) 순으로 지원기준 변경에 적절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남.

〈표 4-8〉 정책 및 사업의 지원 기준 변경의 적절성

단위: %(명)

구분	적절함	적절하지 않음	계(수)
현금성 지원에 차등지원 기준 도입	68.8	31.3	100.0(32)
어린이집 입소대기 우선순위로 '육아휴직 종료 및 복귀' 추가	96.9	3.1	100.0(32)
어린이집 연장보육료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	65.6	34.4	100.0(32)
시간 지원에 자녀수에 따른 지원 강화	65.6	34.4	100.0(3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 가구 양육지원을 위한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출처: 이정원 외(2023). 〈표 V-4-29〉

- 한편 최근 현금지원 종류가 다양화되어 영유아 1인당 2가지 이상의 현금성 지원이 지급되는 경우가 발생함. 동일한 대상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대상자가 한 번에 통합하여 신청하면, 대상자의 현금지원별 자격기준(연령, 기관 이용 여부 등)에 따라 지급액을 일괄 산출하여 통합하여 지급하는 ‘현금지원 통합’ 방안에 대해 전문가 중 81.3%가 적절하다고 응답함.
- 또한 육아휴직 외에도 자녀돌봄을 위해 이용할 수 있으나 현재 무급인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가’와 같은 기타 휴가·휴직 제도도 유급화 하는 방안은 71.9%가 적절하다고 응답하였음.

〈표 4-9〉 제도 개선 방안의 적절성

단위 : %(명)

구분	적절함	적절하지 않음	잘 모르겠음	계
현금지원 통합 방안의 적절성	81.3	18.8	0.0	100.0(32)
기타 휴가·휴직 제도 유급화 방안의 적절성	71.9	21.9	6.3	100.0(3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 가구 양육지원을 위한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출처: 이정원 외(2023). 〈표 V-4-30〉

5. 정책 변동에 대응한 영아 양육지원의 개선 방향

- 전문가 조사 결과 향후 지향해야 할 영아양육지원의 전반적 방향성은 ‘영아를 가정에서 양육할 수 있는 지원의 확대’로 수렴됨. 단, 이러한 방향성에 맞는 추진 전략은 현금 지원의 확대 보다는 부모의 직접돌봄을 지원하는 ‘시간 지원’, 가정양육 가구를 위한 ‘서비스 지원’의 확대가 되어야 할 것임.
- 한편 영아를 위한 가정양육 지원 강화 과정에서 기관보육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변동, 그로인한 기관보육 인프라의 위축 등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대리돌봄서비스의 실수요층에 대한 보완책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함.



발표 1

- 이러한 방향성 하에 양육지원의 범주별로 수요자의 욕구에 부응하며 제도간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가. 서비스 지원

1) 영아 보육 실수요층을 위한 서비스 기관 인프라의 안정성 확보

- 영아 부모 조사 결과 0~1세 영아를 양육하는 경우, '부모가 영아를 직접 돌볼 수 있는 시간'에 대한 요구가 어린이집 등 기관 보육서비스를 통한 '장시간 대리돌봄서비스'에 대한 요구보다는 높은 경향을 보임.
- 또한 '(유급)육아휴직 기간'이 연장될 경우 영아 부모들의 육아휴직 이용 및 육아휴직 이용 기간이 증가하여, 영아의 어린이집 (최초) 이용 시기는 지금보다 늦어질 것으로 예상됨. 즉, 부모의 직접 돌봄을 지원하는 정책의 확대는 영아의 '기관 보육서비스'에 대한 수요 감소, 기관보육서비스 인프라의 축소로 귀결될 수 있음.
- 또한 '부모급여' 등 0~1세 영아 대상 현금지원의 증가로 부모들의 육아휴직 이용 증가 및 이용기간을 더 연장하게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 현금지원 확대와 육아휴직 이용의 확대와 더불어 기관 보육서비스 수요 감소를 함께 예측하고 있음.
- 이러한 영아를 위한 가정 양육 확대 지원이 영아보육서비스 인프라를 불안정하게 할 경우, 현금지원의 확대를 통한 영아 가구에 양육 방식의 선택권 제고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워짐.
- 0세 혹은 0~1세아를 위한 보육서비스 인프라는 영아에 대한 가정양육 지원의 경향이 강화되는 방향 속에서도 부모의 직접 돌봄이 어려운 '대리 돌봄' 실수요층을 위한 인프라로 반드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임.

- 영아의 특성상 도보 10분 이내 이용 가능한 ‘지리적 접근성’을 보장하는 인프라의 유지가 필요함. 영유아 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고려할 때 현재 20인 규모의 가정 어린이집 보다 더욱 소규모로 설치, 접근성을 높인 0~1세 위주의 ‘영아보육 어린이집(가칭)’의 신설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소규모 영아보육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표준보육비용 산정, 인건비 지원 비율 등 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음.

2) 가정 돌봄-기관 돌봄으로의 전환이 시급한 실수요자를 위한 기관 보육서비스 이용 연계 강화: 취업예정자, 육아휴직 후 복귀예정자의 기관 보육서비스 이용 연계 보장

- 영아 부모 대상 조사 결과, 어린이집을 실제 보내기 시작한 시기는 평균 생후 14.7개월이나 어린이집 이용 영아의 약 60% 정도는 희망 시기보다 어린이집 이용을 빨리 시작한 경우였음. 실제 희망하는 시기는 평균 21.9개월로 약 7개월 빨리 이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남.
- 희망했던 시기보다 어린이집 이용이 빨랐던 경우 39.0%는 ‘희망하는 시기에 어린이집에 보낼 수 없을 것 같아서’ 어린이집 입소가 가능할 때 미리 보냈던 것으로 나타남. 자녀 직접 돌봄을 위한 ‘시간 지원’을 받고 있는 육아휴직자가 대리돌봄을 위한 어린이집 이용을 하는 경우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일견 ‘중복 지원(시간+서비스)’으로 비춰질 수 있는 소지가 있으나, 그 경우 주로 복귀 예정 시기에 어린이집 연계가 안될 것을 우려해 미리 입소를 한 경우였음.
- 맞벌이 비율이 높고 출산 후 대부분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육아휴직 후 이용할 수 있는 보육서비스 기관이 충분히 갖추어진 스웨덴의 경우 입소할 보육서비스 기관이 없을 것을 우려한 보육서비스 기관의 조기 입소와 중복 지원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이와 달리 우리나라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이용 후 직장에 복귀하는 시기에 어린이집 이용을 보장받지 못함으로 인해 경쟁적인 조기 대기과 조기 입소의 형태가 나타났을 것으로 짐작됨.



- 이에 육아휴직 종료 후 기관 보육서비스 이용 연계를 보장하여, 시간 지원을 받는 동시에 서비스 지원을 이용해야 하는 모순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복귀 시기가 예정된 육아휴직자 혹은 신규 취업 시기가 예정된 경우 등 대리돌봄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한 영아 가구를 위해 예정 시기에 맞게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에 연계될 수 있도록 입소우선순위의 추가 등의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3) 영아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영아 연장보육료 수익자 부담·차등지원 도입

- 0~1세 영아보육서비스 지원 방향에서 보편지원으로 누구나 접근 가능한 기본 보육 이외 ‘연장보육서비스’는 ‘실수요자 집중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격을 현재와 같이 ‘장시간 대리 돌봄’이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여야 함. 또한 장시간 보육서비스인 만큼 서비스 질(급간식, 인력, 프로그램, 물리적 환경 등)의 개선이 더욱 필요한 상황으로,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일정 부분 수익자 부담을 도입할 필요도 있음. 가구소득에 따른 연장보육료 차등 지원과 총 보육료 지출액에 대한 상한액 설정을 동시에 마련하여 영아 가구 부담을 최소화하여야 함. 연장보육료의 가구소득별 차등지원은 ‘아이돌봄서비스’의 가구소득 기준 유형과 통일된 기준을 통해 동일한 기준에 따른 차등지원 방안을 마련하며 연장보육료의 수익자 부담의 총액 상한은 0~1세에 지급되는 ‘부모급여’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정할 수 있음.

〈표 5-1〉 실수요자를 위한 연장보육서비스의 질 제고 방안

개선 목표	대상 제도	방안
실수요자를 위한 질 높은 연장보육서비스 제공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연장보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장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재정 확보: 연장보육 이용에 대한 수익자 부담 및 가구소득별 차등지원 도입 & 가구부담 최소화를 위한 보육료부담상한액 설정 - 수익자 부담 도입시 ‘아이돌봄서비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구소득 기준유형과 통일된 기준 및 차등지원을 사용 고려. - 0~1세 부모급여 지급액을 보육료 총액이 초과하지 않은 수준으로 상한액 설정.

4) 단시간 이용서비스 접근성 제고

- 부모급여 도입, 육아휴직의 확대로 특히 0~1세 이하 영아의 가정양육이 확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이에 가정양육 영아에게 긴급하게 발생하는 단시간 대리양육 욕구에 대한 대응, 양육자의 육체적·정신적 부담 경감 등을 위한 단 시간 이용할 수 있는 돌봄서비스의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시간 제 보육의 인프라 확대 및 접근성 강화 필요.
- 영아가 이용할 수 있는 대표적 단시간 돌봄서비스인 '시간제보육' 서비스는 장 거리 이동이 어려운 영아를 타겟층으로 하는 서비스로 거점형 보다는 지리적 접근성을 높인 형태로의 개소 수 확대가 적절할 수 있음. 이에 정규학급과 물 리적인 거리가 확보될 수 있는 기존 중규모 이상의 어린이집에 별도의 안정적 인력을 두어 운영함이 시간제보육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지 역 거점형 시간제보육기관의 형태로 운영될 경우는 지자체의 유관 사회복지 서비스 기관을 순환하는 형태의 운영수단 제공도 병행하여 접근성을 높일 필 요가 있음.
- 한편, 시간제보육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이용 대상 연령 하한을 현재의 생 후 6개월에서 영아가 이용할 수 있는 단시간 서비스인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대상 연령인 생후 3개월 이상으로 동일하게 맞추어 확대하는 것도 고려할 필 요가 있음. 일본의 경우 시간제보육의 이용 하한 연령이 생후 2개월 정도로 설정되어 있는 바,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해당하는 산전후 90일(산후 최소 45 일) 이상부터는 시간제보육 이용 대상 연령에 포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전 문가 조사 결과

〈표 5-2〉 가정양육 강화 정책에 대응한 서비스 지원의 정합성 제고 방안

개선 목표	대상 욕구	방안
실수요자 장시간 영아 보육서 비스 접근성 제고	취업 등으로 인한 장시간 대 리 돌봄 수요/양육 공백 해 소	-0~1세 대상 정원 10인~19인 이하의 소규모 영아 보육 어린이집 신설, 운영 기준 마련 -연장보육 자격 제한 유지 -입소대기 우선순위 항목에 '육아휴직 종료 예정' 추 가



발표 1

개선 목표	대상 욕구	방안
서비스 질 제고	(부모 직접 돌봄 불가시)민 고 맡길 수 있는 대리돌봄 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장보육료 소득기준별 수익자 부담 도입으로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재정 확보 -어린이집 0~1세반 연장보육서비스 가구소득별 연장보육료 차등 지원, 상한액 설정으로 비용부담 완화 -연장보육 전담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확대, 연장보육 석식 등 급간식 질 제고 •아이돌봄서비스 인력 자격기준 및 교육·훈련 강화
단시간 이용 서비스 이용 접근성 제고	가정양육 가구의 단시간 돌 봄 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간제보육 기관 확대(물리적 접근성 강화) -시간제보육 이용 대상 연령 하향(현행 생후 6개월 이상 → 생후 3개월로 하향 확대)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인력 양성 확대

출처: 이정원 외(2023). <표 VI-3-2>

나. 현금 지원

1) 유사 중복성 현금 지원 통합

- 자녀양육에서의 대표적인 애로사항인 경제적 부담(양육비) 완화 및 아동의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2010년대 후반 이후 아동 양육 지원을 위한 현금성 지원이 적극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함. 2022년 이후 영아 대상으로 기존의 가정양육수당의 지급 수준을 대폭 상향한 ‘영아수당’, 출산후 1년간 사용 가능한 ‘첫만남이용권’, 2023년 ‘부모급여’ 도입 등 0~1세 영아 대상의 현금 지원이 집중 확대됨.
- 이는 그간 영아와 유아 양육 욕구의 차이에 대한 고려 없이 주로 어린이집·유치원 등 기관 보육·교육서비스 위주로 지원되었던 경향에서 영아 양육 가구에 대한 차별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인식, 영아기 양육 형태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서 의미가 있는 변화임.
- 단, 최근 도입된 국가 수준의 현금 지원은 종류별 목적에 있어 차별성을 찾기 어려워 영아 가구 입장에서도 수당별 차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사용처에 있어서도 구분되지 않는 경향임. 개별 현금 지원은 사전 신청이 필요하므로, 대상

아동의 연령 및 어린이집 이용 여부 등 자격조건을 한번에 확인하여 통합하여 지급하는 신청·지급의 일원화, 나아가 목적의 차별성 없는 현금 지원들을 통합하여 간소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통합·일원화의 필요성은 현재 우리나라의 각종 현금성 지원이 대부분 가구소득, 자녀수 등 가구특성이나 욕구를 반영하지 않은 보편적 지원이라는 특성에서 비롯됨.

- 가구소득, 자녀수 등에 따른 다른 차등 없이 아동의 연령이나 기관이용여부에 따라서만 수급액이 달라질 뿐 보편적으로 자녀가 있는 모든 가구가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모급여, 가정양육수당의 경우는 특히 특성의 차이를 구분하기 어려우나, 부모급여는「아동수당법」, 가정양육수당은 「영유아보육법」으로 근거법도 달라 더욱 혼동을 주는 상황임.
- 한편 부모급여가 어린이집 또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 바우처로 지원하며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형태임에도 조건 없이 8세 미만의 아동 대상으로 10만원의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아동수당과 동일한「아동수당법」에 근거하고 있는 것도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짐. 「영유아보육법」과 「아동수당법」에 걸쳐 있는 유사·중복적 현금지원의 법률적 근거와 유형의 통폐합·간소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기본적으로 목적 또는 지급 주기의 차별성이 있거나(예: 첫만남이용권) 특정 대상을 선별하여 지급하는 현금 지원(예: 장애아동양육수당, 농어촌수당)을 제외하고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유사한 목적으로 지급되는 개별 수당들은 장기적으로 통합하여 일괄 신청 및 일괄 지급되도록 간소화할 필요가 있음.

〈표 5-3〉 유사·중복성 현금지원의 통합 방안

개선 목표	대상 현금 지원(근거법)	방안
유사·중복적 현금지원 통폐합	-가정양육수당 (영유아보육법) -부모급여 (아동수당법)	- 2~5세 가정양육수당을 '부모급여' 체계로 통합 - 8세 미만까지 지급되는 보편적 '아동수당' 지급액 일괄 추가하여 지급 - 프랑스 '자녀 보육 방식의 자유로운 선택을 위한 보조금' 벤치마킹 및 변형(어린이집·유치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 바우처 전액 및 현금 차액 지급, 공공서비스 이용 외는 현금 수급액으로 이용) - 연령별 부모급여 지급액 차등화 지속 적용



발표 1

개선 목표	대상 현금 지원(근거법)	방안
수급자의 신청·수급의 편의성 제고	부모급여·아동수당 신청 및 자격조건별 지급 일원화	- 부모급여·아동수당 통합 신청 - 자격조건별 산정된 부모급여(현금) 수금액+10만원(아동수당) 통합 지급

출처: 이정원 외(2023). <표 VI-3-3>

2) 육구(양육비 부담 완화 육구: 가구소득 수준, 자녀수)별 차등 지원 도입

- 우리나라에서 지급되고 있는 자녀 양육을 위한 현금 지원은 자녀 양육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여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목적을 모두 지니고 있음. 그럼에도 가구의 경제적 육구의 차이(가구소득)에 관계없이 모두 보편적인 지원의 형태로 지급됨에 따라 경제적 부담이 높은 가구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어려움.
- 지원의 충분성·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지원 수준을 일괄 상향하는 것은 국가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될 것임. 이에 프랑스의 사례처럼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자녀 양육 가구만 대상으로 하거나(예: 출산 보너스), 대상이 보편적인 수당이라도 가구의 소득수준, 자녀수 기준에 따라 지급액을 차등화한 현금 지원(예: 출산 기초 수당, 가족수당), 취업 부모에게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인 대리돌봄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에 한정하여 소득수준, 자녀수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자녀 보육 방식의 자유로운 선택을 위한 보조금' 등 현금 지원의 주된 목표인 '자녀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완화'를 달성할 수 있는 차등지원 기준을 도입해 현금지원의 목적에 맞는 체계화가 필요함.

다. 시간 지원

1) 시간 지원의 대상 포괄성 강화

- 우리나라의 출산·양육 관련 시간 지원은 대상의 포괄성과 다양한 육구에 따른 시간지원 다양한 시간 지원 형태의 활성화가 필요함.

- 대표적인 시간지원 제도인 ‘육아휴직’의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제도 이용에서 배제되는 경우를 줄여 대상의 포괄성을 확대하는 것을 우선적인 목표로 비정규직 근로자, 특수고용 형태의 근로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의 부모가 자녀 돌봄을 위한 시간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해야 할 것임.

2) 육구(자녀 직접 돌봄 시간 육구: 자녀수)에 따른 차등 지원 도입

- ‘부모 직접 돌봄’을 지원하는 시간지원에 있어서도 핵심 육구인 ‘자녀양육 시간’의 필요성 차이를 반영한 제도 개선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대표적으로 출산한 배우자(어머니)의 건강 회복과 양육지원의 목적이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에 이러한 기준을 고려한 개선이 가능할 것임.
- 현재 우리나라의 ‘배우자 출산휴가’는 동시 출생 자녀수 또는 총 자녀수에 대한 고려 없이 동일하게 1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함. 배우자가 동시에 쌍둥이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다둥이), 혹은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모성의 건강회복과 자녀양육을 돕기 위한 배우자의 역할 부담은 커질 수 있음. 이에 가구 내 ‘총 자녀수’ 혹은 최소한 자녀 돌봄의 지원이 더 필요한 ‘영유아 자녀수’를 고려해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차등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프랑스의 경우 우리나라의 ‘배우자 출산휴가’에 해당하는 ‘아버지 돌봄 휴가’는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한 경우 통상 25일의 휴가를 이용할 수 있으나, 다태아 출산 시에는 32일의 휴가를 받는 등 다태아 출생에 따른 ‘돌봄’ 자원의 추가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는 사례임.
- 본 연구의 영아 부모 대상 조사에서 배우자 출산휴가의 개선 요구로 ‘마음놓고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다음으로 ‘이용기간 확대’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았음(36.5%). 핵가족이 보편화된 시대에서 부부 외 육아를 분담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 현재의 10일 기준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와 더불어 다태아를 출산한 여성의 출산휴가 기간이 약 30% 추가됨을 고려 자



녀수 1명이 추가될 때 3~4일의 휴가기간을 추가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 있음.

〈표 5-4〉 자녀수 기준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차등 부여 방안

개선 목표	대상 제도	방안
시간 지원 욕구 대응	-배우자 출산휴가	•현행 자녀수 무관 배우자의 출산시 유급 10일의 휴가 부여 영유아 자녀수 기준(집중적 돌봄 필요) 자녀수 1명 추가 시 배우자 출산휴가 약 30~40% 추가 부여 예) 출생아 포함 영유아 자녀 1명 10일/ 2명 13~14일/3명 16~17일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 가구 양육지원을 위한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출처: 이정원 외(2023). 〈표 VI-3-4〉

3) 시간지원의 취약 대상을 위한 인센티브 도입

- 외벌이 가구의 유일한 소득원인 취업 부모(근로자인 한부모 포함)와 같이 자녀를 직접 돌볼 수 있는 기회인 육아휴직제도에서 실질적으로 배제되는 '시간 지원 취약계층'이 자녀를 직접돌볼 수 있는 권리를 실행할 수 있도록 '시간지원 취약대상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이 필요함.
- 이는 육아휴직 이용시 가구소득 감소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맞벌이 가구보다 크기 때문임. 이에 맞벌이 가구의 부부 모두의 육아휴직 이용을 증진하기 위한 조치에서 활용되는 특례와 유사한 형태로 '외벌이 가구'의 취업부모, '한부모 가구'의 취업부모가 육아휴직을 이용한 경우 상한액을 '3+3 부모육아휴직제'에서처럼 200~300만원 선으로 높이는 방안 등 시간지원 인센티브 도입이 필요.

〈표 5-5〉 시간지원의 취약대상을 위한 특례(안)

개선 목표	대상 제도	방안
시간 지원 취약대상 지원	육아휴직제도 (육아휴직급여)	• 외벌이 가구의 취업 부모, 한부모 가구의 취업부모 대상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특례 지원 육아휴직 급여 대체율 80%(상한액 200~300만원선 인상)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 가구 양육지원을 위한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출처: 이정원 외(2023). 〈표 VI-3-5〉

4) 시간 지원의 성별 이용 형평성 제고

- 본 연구를 위한 영아 부모 대상 조사 결과 육아휴직제도,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 등 주요한 자녀 양육을 위한 시간지원제도의 이용 경험은 여성이 남성보다 월등히 높았음.
- 전문가 조사 결과 향후 육아휴직제도 이용 기간, 급여 확대 시 주로 여성의 이용율, 이용기간 확대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부모들은 남성의 시간지원제도 이용에 있어 가장 개선해야 할 사항은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라 응답하여 현재 시간 지원 제도는 남성의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용이 어려운 상황임을 드러내고 있음.
- 시간지원 강화가 여성위주의 자녀돌봄 경향을 더욱 공고화하는 역효과를 막기 위해서는 남성의 시간지원제도 이용률을 제고하고 부모가 함께 자녀를 직접 돌볼 수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메시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02

발표

2023년 제4차 육아정책 심포지엄
영유아 양육지원 고도화를 위한 전제: 양육지원 정책의 체계화 및 데이터 기반 정책 강화

영유아데이터 통합 현황과 정책 과제

도 남 희 선임연구위원
(육아정책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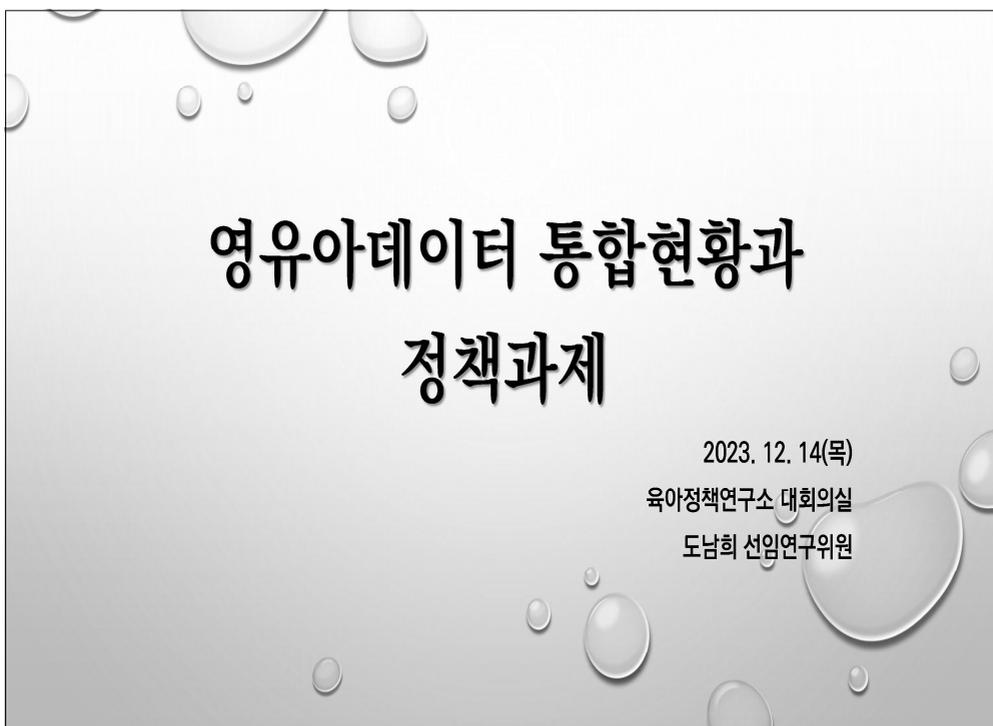
02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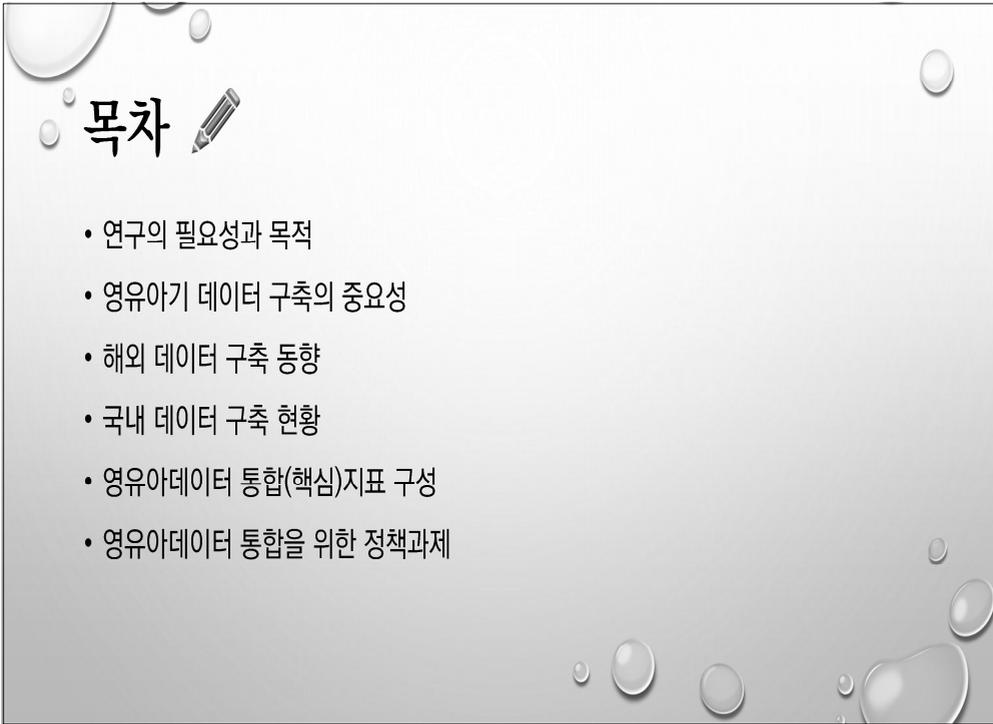


영유아데이터 통합 현황과 정책 과제³⁾

도 남 희 선임연구위원
(육아정책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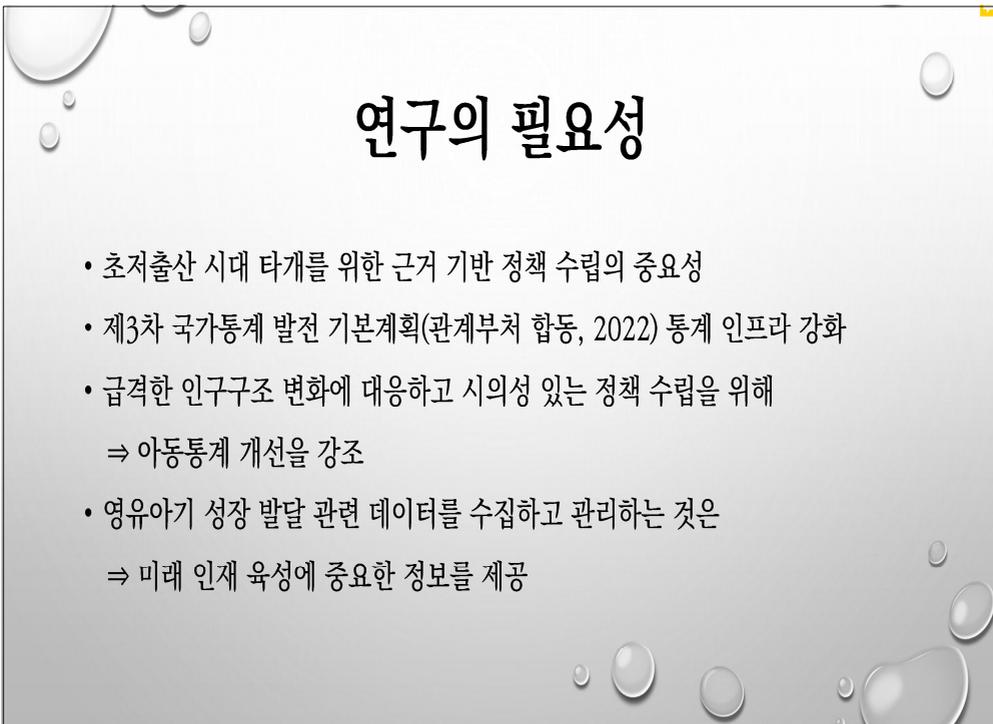


3) 본 원고는 2023년도 기본과제로 수행중인 “영유아데이터 통합현황과 개선 방안”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것임.



목차

-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영유아기 데이터 구축의 중요성
- 해외 데이터 구축 동향
- 국내 데이터 구축 현황
- 영유아데이터 통합(핵심)지표 구성
- 영유아데이터 통합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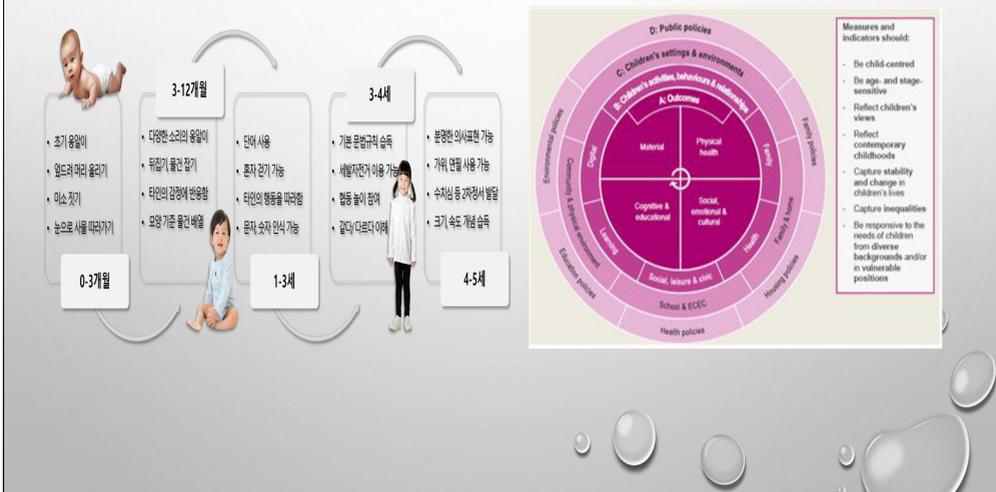
- 초저출산 시대 타개를 위한 근거 기반 정책 수립의 중요성
- 제3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관계부처 합동, 2022) 통계 인프라 강화
-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시의성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해
 - ⇒ 아동통계 개선을 강조
- 영유아기 성장 발달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것은
 - ⇒ 미래 인재 육성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

연구의 목적

- 영유아의 발달 시기에 맞는 지표 체계 마련
- 지표 체계에 부합되는 국내 데이터 검토
-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을 추적할 수 있는 데이터의 통합 정도를 파악
⇒ 영유아데이터 통합 현황을 검토하여 개선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제안함



영유아기 데이터 구축의 중요성



국외 데이터 구축 동향

- 국제적으로 관심이 적었던 영유아 발달과 삶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
- OECD, UNICEF 등에 영유아 관련 지표와 측정 도구 등 개발에 노력함
- 영유아기 데이터에 관한 관심과 지표 체계 구축에도 불구하고 영유아기의 국가 수준의 통계나 데이터가 제한적이고 완전하지 않음
- 국제 기구 뿐만 아니라 아일랜드, 미국 등 영유아 관련 지표와 데이터를 생산하고 있음

아일랜드의 0-5세 지표

아일랜드 0-3세 지표

영역	지표명	세부지표
배경	부모양육과 가정 환경	가족 구조, 비동거 부모, 양육방식과 훈육
	보육과 조부모	교육 계획, 조부모 지원
	경제적 재정적 상황	모의 고용, 수입
발달 성과	신체 발달, 성장과 영양	대근육 발달, 소근육 발달 성장과 섭취
	건강, 질병과 부상	전반적 건강, 질병, 건강보험 사용
	사회-정서 발달	SDQ, 기질과 3년간 행동문제
	인지와 언어 발달	British Abilities Scales, 말과 언어 발달

아일랜드 0-5세 지표

영역	지표명	세부지표
가족 특성과 재정 상황	가족특성 가족재정과 경제적 상황	가족구조 변화, 특성, 고용상황, 평균소득 등
신체건강과 발달	건강수준, 상해, 항생제 사용 과체중과 비만, 영양 섭취 의료카드 커버 및 GP상담	종단적 건강 추이, 장기 질병 상황 및 장애, 의료 카드 사용 범위 등
사회-정서 발달과 놀이	강점과 어려움, 사회적 기술 발달, 놀이와 활동	부모보고, 교사보고, 정기 추이, 신체활동 등
양육과 가족관계	부모-자녀 관계, 양육방식 훈육전략, 양육 스트레스, 가족활동, 비거주 부모와 주 양육자 보고	부모-자녀 관계 장기 추 이, 양육 유형, 가족 구성 원과의 활동, 비거주 양육 자와의 자녀 접촉 등
학교와 인지 발달	학교 시작, 무료 취학 전 학년 활동, 학교 준비도, 인지발달	학교 시작 개발과 성별, 부모와 교사 보고 등

미국의 YEARBOOK 0-3세 지표

영역	지표명	세부지표
건강	건강보험 접근성	건강보험 확대, 저소득 가구의 베이비, 태아의 산전 모성 보호, 치료 방문, 정책 권고와 관련 조치
	영양	모유 수유/수유 6개월 이상, WIC 수혜, 정책 권고와 관련 조치
	모성 건강	산전 보호를 못 받거나 낮은 보호, 모성 사망률, 적정 정신 건강 이하 모, 정책 권고와 관련 조치
	아동 건강	조산아, 저체중아, 영아사망률, 예방적 방문, 예방접종, 치료 방문, 코로나 예방 보호 효과, 정책 권고와 관련 조치
	영아와 유아기 정신건강	영유아의 사회정서 스크리닝, 영유아의 정신건강 서비스 의학적 수혜, 코로나 효과로서 사회정서 바른 발견들, 정책 권고와 관련 조치
건강한 가족	기본 요구 지원	저소득가구의 근로 연계 복지(TANF) 수혜, 밀집 주거, 기본적 요구의 코로나 영향, 정책 권고와 관련 조치
	아동 웰빙과 탄력성	가족 탄력성, 2개 이상의 ACES, 집에서 격리, 정책 권고와 관련 조치, 관련 연방 정책 조치와 주정부 기회
	지지적인 정책	유급 가족 휴가, 유급 아이 돌봄 휴가, 주 자녀 세금 공제, 주 소득 공제, 관련 연방 정책 조치와 주정부 기회
긍정적인 초기 학습 경험	보육의 질을 지원하는 요소들	영유아 보육을 위한 주 정부 기준, 성인-아동 비율 준수, 그룹 사이즈 준수, 교사 자격, 영유아 전문 자격증
	초기 보육과 교육 기회들	부모가 매일 읽어주기, 초기 배움 프로그램 접근, EHS접근 가능한 소득 적격 영유아, CCDF 지원의 영유아, 보육의 코로나 영향
	정책 권고와 관련 조치들	관련 연방 정책 조치와 주정부 기회
	조기 개입과 예방 서비스	수혜 발달 스크리닝, IDEA 파트 C 서비스를 받은 영유아

국내 데이터 구축 현황

- 영유아 대상과 관련 자료 승인 통계는 40여종, 전체 승인통계의 3.1%
- 영유아 및 아동 대상 승인통계는 모두 14종, 그 중 영유아 대상은 7종
 - 영유아를 대상을 하는 통계는 유아교육실태조사, 보육실태조사, 어린이집이용자 통계, 보육통계, 전국예방접종률 현황, 육아휴직 통계, 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 등
 - 보육과 교육 실태 관련(유치원, 어린이집 대상) 조사와 건강 관련 조사 한정
- 영유아가 포함된 전체 연령 대상이거나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영유아와 관련된 통계가 산출되는 경우 등

영유아 관련 승인 통계 요약

구분	조사통계	보고통계	가공통계	계
영유아 및 아동 대상 통계	5종	8종	1종	14종
전체 연령대상 통계	6종	8종	2종	16종
가구(또는 개인) 대상 통계	8종	-	2종	10종

주: 1) 조사통계: 조사대상자(전수 또는 표본)에게 조사하여 산출된 통계

2) 보고통계: 법령에 의한 개인, 단체의 신고, 보고, 신청, 인허가 등과 같이 다른 행정업무에 수반하여 수집된 자료로부터 작성한 통계

3) 가공통계: 일차적으로 집계된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2차 목적의 통계 작성

출처: 나라통계시스템(www.narastat.kr/metasvc/index.do)의 통계설명자료를 이용하여 재작성

국내 영유아데이터 측정의 한계

- 각 조사의 영역들이 한정적이고 영유아기를 포함하는 조사 많지 않음
- 짧은 시기에 발달이 급등하는 영유아기를 측정하는데 한계 있는 조사 주기
- 건강, 안전, 학습, 여가 등에 대한 한정된 내용으로 종합적인 내용을 측정하는 경우가 많지 않음
- 짧은 주기의 다면적 측정이 가능한 포괄적인 조사나 통합적 구성이 필요

영유아데이터 통합 지표 구성

- 통계청 아동 삶의 질에 구성된 영유아 지표가 있음
- 영유아의 발달에 부합되는 지표를 구성하고자 영아기와 유아기의 중요성과 적절성에 대해 확인함
- 보육, 유아교육, 아동복지, 통계 관련 및 공공기관 종사자 등 68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2차에 걸쳐 전문가 조사 진행
- 시기별 핵심지표를 구성하고 기존의 승인통계에 이들 지표가 있는지 확인함

지표 구성을 위한 논의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2022 지표보고서

구분	0-24세 아동	0-5세 영유아
삶의 질	건강	영양·건강
	학습·역량	발달·학습
	안전·행동	안전·보호
	물질적 상황 및 주거환경	물질적 상황 및 주거환경
	여가활동 참여	놀이
	관계	관계·돌봄
	주관적 웰빙	행복감

- 영유아데이터 필요성 공감
- 정책 수립의 근거자료, 국가차원의 영유아 데이터 수집 필요, 영유아의 삶 이해, 영유아 관련 데이터 부족, 개인이 수집하기 어려움 등
- 영아기와 유아기의 지표 구성 제안
- 기존의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지표 참고



☑ 전문가조사 결과 핵심지표

영역	핵심 지표
사회적 배경	아동, 청소년 인구추계, 장애 아동 비율, 출생아수와 출생성비, 어린이집이동률, 영유아원차원율, 유치원(어린이집) 교직원 1인당 아동 수, 보호대상아동발생비율
물리적 환경	부/모의 고용상황, 부/모의 평균소득, 물질적 결핍(material deprivation) 지수, 거주지역 내 병원 접근 용이성(소아과, 응급실) 어린이집(영유아놀이시설)현황,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서 사는 아동비율
건강·영양	신체활동 정도, 영유아 건강검진비율 및 정밀평가필요 영유아비율 예방접종 비율, 영양섭취 1일 섭취량에 따라 영유아 식품 알레르기 여부, 수유형태별비율
발달·학습	신체발달, 정서 발달(정서인식, 표현, 조절), 사회성 발달(자아개념, 자기조절, 사회적 기술, 공감),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 만족도, 책임여 주기 빈도, 사교육 참여율 및 시간
안전·보호	아동학대 발생 건수, 아동 방치 정도, 가정 내 체벌 경험 비율
관계·돌봄	부모와 함께 하는 시간, 주양육자 유무 여부, 부모와 애착 정도 친구와 놀 수 있는 기회 정도(어린이집, 유치원, 놀이터 등), 친구와 잘 어울리는 정도, 친구와 노는 시간과 장소
놀이·미디어	놀이 시간(실내/실외), 아버지와의 놀이 시간, 어머니와의 놀이 시간, 매체(아이패드, TV 등) 이용 정도,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 비율, 디지털미디어 기기 이용 여부 및 시간
행복감	기질, 긍정적 정서(행복감), 자기자신에 대한 만족도

핵심지표에 따른 데이터 확보 검토

영역	핵심지표	데이터 출처
관계·돌봄	부모와 함께 하는 시간	아동종합실태조사
	주양육자 유무 여부	아동종합실태조사
	부모와 애착 정도	아동종합실태조사
	친구와 놀 수 있는 정도	가족실태조사
	친구와 잘 어울리는 정도	아동종합실태조사
	친구와 노는 시간과 장소	아동종합실태조사

- 현재 승인통계 내 핵심지표에 해당 데이터 확보 가능
- 일부 데이터는 부모 응답 위주로 영유아들의 직접적인 응답은 많지 않음
- 영유아들의 직접적인 관찰이나 응답을 유도할 수 있는 척도나 기술 개발이 필요함

영역	핵심지표	데이터 출처
행복감	기질	아동종합실태조사
	긍정적 정서(행복감)	아동종합실태조사
	자기자신에 대한 만족도	아동종합실태조사

영유아데이터 통합을 위한 정책과제

- 🔍 영유아데이터 생산 체계 구축
- 🔍 영유아데이터 관리 체계 구축
- 🔍 영유아데이터 베이스 구축

🔍 영유아데이터 생산 체계 구축

- 영유아데이터 신규 생산 방안
- 영유아종합실태조사 신설
- 기존 데이터 연계 방안: 행정데이터 및 보고데이터
- 영유아가구 통계 등록부 구성



영유아 종합 실태조사 신설 제안

통계명	전국 보육 실태조사	전국 유아교육 실태조사	영유아 종합 실태조사
승인 년도	2004-10-19	2016-06-21	가까운 시일내(2025?)
작성 목적	영유아의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실태, 만족도, 요구도 파악 및 보육시설 운영의 전반적 현황 파악을 통한 보육·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수요자와 공급자의 보육실태 기초자료 생산	유아교육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국내 유아교육 실태 전반 관련 기초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정책 수립의 근거 제공, 실태조사의 제도화에 기본을 마련함	영유아에 대한 사회적 배경, 발달, 부모관계 등 관련 기초 자료 생산, 분석하여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정책 수립의 근거 제공 및 제도화에 기여함
작성 주기	3년	5년	2년
대상 지역	전국	전국	전국 시·군·구
조사 대상	어린이집 및 미취학 아동가구	기관과 교사	0-5세 영유아 부모 및 주양육자
조사 방법	면접조사	면접조사, 웹조사(교사)	면접조사

기존 데이터 연계 방안

- 새로운 영유아 중심의 종합실태조사 수행이 어려운 경우
- 핵심 지표와 주요 지표에 부합되는 문항 추가(승인통계 조사)
- 아동종합실태조사에 많은 문항이 의미 있으나 부모 응답 위주임
- 또한 영유아기-아동 초기-아동 중기의 세분화하여 문항 구성 바람직함
- 아동종합실태조사-청소년종합실태조사 연계로 생애주기를 볼 수 있도록

영유아가구 통계 등록부 구성

- 영유아종합실태조사의 신설: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대한 풍부한 정보
- 기존 통계나 실태조사를 통한 데이터 확보
- 0-5세 영유아명부 구축, 인구통계 등록부, 주민등록 자료, 가족관계 등록자료, 인구동향실태조사 자료 활용으로 부모 연계, 관련 경제활동 데이터베이스, 4대 보험자료 등
⇒ 영유아가구 통계 등록부 구성



영유아데이터 관리 체계 구축

- 핵심 지표의 지속적 생산과 모니터링
- 새로운 조사 기법과 측정 기술의 개발
- 영유아데이터 지표 보고서 작성
- 영유아데이터 관련 국가적 홍보 필요





영유아데이터 베이스 구축

- 영유아데이터 핵심 지표체계 데이터 생산
- 지속적인 영유아데이터 베이스 구축과 관리
- 데이터 기반의 정책 수립

근거 기반 정책 기반 수립을 위한 통합 방안

개선 방안	단기	중기	장기
• 데이터 생산체계 구축	영유아종합실태조사 신설 기존데이터 연계: 보고통계, 행정통계	데이터 베이스 구축과 관리	새로운 조사와 측정 기법 개발
•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핵심 지표의 데이터 지속적 생산과 모니터링	영유아데이터 지표 보고서 작성	영유아데이터 중요성 및 관련 자료 국가 홍보
• 데이터 베이스체계 구축	핵심 지표의 데이터 생산	영유아가구 통계등록부 구성	데이터 기반 정책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2023년 제4차 육아정책 심포지엄

**영유아 양육지원 고도화를 위한 전제:
양육지원 정책의 체계화 및
데이터 기반 정책 강화**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